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체제의 도입 가능성

- 영국 및 미국 기업집단체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05. 12

이준규 · 김진수

KIPF 한국조세연구원

(빈 페이지)

서 언

기업집단세제는 모·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기업집단세제는 기본구조와 성격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연결납세형과 손익대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결납세형은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여 기업집단을 단일주체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연결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들의 손익을 통산하여 산출한 연결과세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반면 손익대체형은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기업집단의 과세를 간편하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하고, 대체 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기업집단세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부터였다. 지주회사제도를 세제면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감소 가능성,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제도의 복잡성 등 도입과 관련된 우려로 인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일정이나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자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이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고 있고 논리적으로도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한다면 미국의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

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최근까지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의 최대의 약점은 수미일관된 논리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너무나 방대하고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제도가 방대한 만큼 도입시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 추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 대신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교하고 일관된 기업집단세제의 논리를 포기하는 대신 단순하고 간편하게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고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경희대학교의 이준규 교수와 본원의 김진수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국민대학교의 안경봉 교수, 경원대학교의 윤태화 교수와 이 전오 변호사, 그리고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수고한 박승준 연구원과 변경숙 연구조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준 연구홍보팀의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사점

I. 주요 내용

가. 배경

기업집단세제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개별기업이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을 마치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여 그 기업집단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제이다. 기업집단세제는 기본구조와 성격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연결납세형과 손익대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결납세형은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여 기업집단을 단일주체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연결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들의 손익을 통산하여 산출한 연결과세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반면 손익대체형은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기업집단의 과세를 간편하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하고, 대체 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기업집단세제는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여야 할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은 거의 없으며 그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있어서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고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도 미국식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집단세제가 아직 입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중요한 하나는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가 너무 복잡하여 입법당국의 부담이 크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대안으로 영국형의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인 결손이전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나. 미국과 영국의 기업집단세제 비교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실체관의 입장에서 기업집단을 단일실체로 보고 각종 조세혜택의 통산,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투자수정 등 수미일관된 논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제도이다. 반면 영국의 결손이전제도는 법적 실체개념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법인들이 개별적으로 납세하되 조세지원책의 일환으로 결손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결납세제도가 더 우수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도의 복잡성을 비교해 보면,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의 경우 제도를 규정한 법령의 분량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고 복잡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데 비하여, 영국의 결손이전제도는 30여 페이지에 불과한 분량이고 그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량은 영국 고유의 규정인 컨소시엄 결손이전 및 소득구분을 위한 스케줄 제도로 인한 조항들이어서 이를 제외한다면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가 월등하게 간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집단세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손통산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제외하고는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투자수정, 각종 한도의 통산 등으로 인하여 세수감소와 세수증가 효과가 서로 상계되며, 상당부분은 조세선급 또는 유예효과만을 가지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결손통산효과에 비하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경우 결손이전만을 규정하더라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수감소효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정책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가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적합하므로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지 말고 결손이전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결국 기업집단세제의 도입형태도 정책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다만,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가 연결납세제도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입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경제적 실질이 세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함에 따라 논리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희생하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는 기본적으로 개별납세제도이기 때문에 손익대체규정 이외에 기업집단에 대한 조세지원으로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국의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영국 고유의 제도이다. 이를 조

세지원의 확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도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 기업집단세제를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1)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도이며 도입초기에 세수를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영국의 결손이전제도가 복잡하게 된 것은 주로 컨소시엄 결손이전규정에서 기인한다. 물론 기업에는 더 큰 조세지원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으나 기업집단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복잡한 조치들이 필요하는 등 입법당국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둘째, 결손이전 이외의 조세지원은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초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손이전 이외의 조세지원으로서 내부거래손익의 이연규정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초기에는 순수한 결손이전제도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등이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가급적 세제를 단순하게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은 일시적인 조세효과에 불과하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서로 상계되므로 결손이전에 비하여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3)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자본이득 또는 손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국에서처럼 자본손익을 결손이전대상에서는 제외한다든가 자본자산에 대한 내부거래손익을 이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내부거래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남용할 여지가 축소될 것이다.

셋째,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는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초기에는 100% 자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집단세제를 도

입한 대부분의 국가(미국, 일본, 호주 등)들은 최초 도입단계에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를 모회사와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100%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수 주주로 인한 복잡한 조세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최초에는 100% 자회사만을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10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손이전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100% 자회사만을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결손이전의 대가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연대 납세의무의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이후 자회사의 범위를 100% 미만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세법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100% 자회사만을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수주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손이전대가의 적정여부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상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손이전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초기에 세수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연결가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퇴직 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규정까지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부가세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집단세제의 선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기업집단세제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수감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결손이전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1) 옵션이나 전환사채 등을 이용하여 기업집단 범위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2)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인 내포손익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기업집단에 가입시킨 후 당해 내포손익을 실현시켜 결손이전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3)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인위적인 손익을 발생시켜 결손이전금액을 증가시키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손익은 인식하되 이전가능 결손금액과 공제가능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15
II.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	19
1. 선행연구 검토	19
2. 기업집단세제 도입유형의 비교	26
III. 미국의 기업집단세제	28
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28
2. 연결납세의 대상	30
3. 연결납세의 선택 및 중지	34
4. 사업연도	36
5. 회계처리방법	37
6. 자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공통의 모회사	39
7. 연결세액의 납세의무	41
8.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45
IV. 영국의 기업집단세제	60
1. 기업집단세제의 도입과정	60
2. 결손이전제도(Group Relief)	61
3.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Consortium Relief)	78
4.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	85

V. 미국과 영국의 기업집단세제 비교	96
1. 연결납세와 개별납세	96
2. 기업집단세제의 강제적용 여부	100
3. 조세혜택의 통산 또는 이전	102
4. 내부거래	104
5. 투자수정과 잉여금수정	106
6. 조세회피방지규정	108
VI. 우리나라 기업집단세제에의 시사점	114
1. 경제적 실체개념과 법적 실체개념	114
2.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으로 인한 세액증감	117
3. 기업집단세제의 복잡성 및 비용	131
4.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또는 변경에 대한 외국의 사례	139
5.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안	152
VII. 요약 및 결론	163
참고문헌	168

표 목 차

<표 II-1>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유형 비교	7
<표 V-1>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에 따른 차이점	10
<표 V-2> 기업집단세제의 강제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점	12
<표 V-3> 조세혜택의 통산 또는 이전상 차이점	13
<표 V-4> 내부거래손익의 처리상 차이점	15
<표 V-5> 투자수정 및 잉여금수정 여부	17
<표 V-6> 미국과 영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	18
<표 VI-1>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12
<표 VI-2> 연결납세제도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직접효과	18
<표 VI-3>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	19
<표 VI-4> 연결납세형 및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조세효과비교	16
<표 VI-5>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에 관한 일본기업의 의견	17
<표 VI-6>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 도입안	19

그림목차

[그림 III-1] 사업연도중 관계회사집단이 성립된 경우의 연결과세소득 예시	37
[그림 III-2] 연결납세액의 계산과정	45
[그림 IV-1] 기업집단의 개념도	64
[그림 IV-2] 컨소시엄의 개념도	79
[그림 IV-3] 소속집단의 변경	92

I. 서론

우리나라에서 기업집단¹⁾세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세수의 감소 가능성,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제도의 복잡성 등 도입과 관련된 우려로 인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일정이나 방향이 정해진 바 없는 실정이다.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을 논의하는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집단세제를 연결납세제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²⁾ 즉, 많은 연구에서 다른 나라들의 기업집단세제를 연결납세제도로 칭하였고, 기본구조와 성격의 차이에 따라 크게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구분하였다. 소득통산형은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여 기업집단을 단일주체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연결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들의 손익을 통산하여 산출한 연결과세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인 데 비하여, 손익대체형은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기업집단의 과세를 간편하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하고, 대체 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손익대체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결납세제도로라기보다는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회사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기업집단은 이러한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분비율기준을 충족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

2) 김종철·오윤택(2001), 이윤택(2000), 김진수·이준규(2002) 등.

개별납세제도의 특수한 형태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연결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한 후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것이지 단일의 연결과세소득과 연결납세액으로 신고납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와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 대신에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a consolidated return model of group taxation)와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a profit-and-loss transfer model of group tax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최근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자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이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³⁾하고 있고 논리적으로도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한다면 미국의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⁴⁾ 그러나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의 최대의 약점은 수미일관된 논리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너무나 방대하고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제도가 방대한 만큼 도입시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 추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 대신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교하고 일관된 기업집단세제의 논리를 포기하는 대신 단순하고 간편하게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연결납세형

3) 미국과 일본 이외에도 OECD 국가들 중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멕시코 및 룩셈부르크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호주는 종전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2002년부터 연결납세형으로 기업집단세제를 변경한 바 있다.

4) 이우택(2000), 김종철·오윤택(2001), 김진수·이준규(2002), 신찬수(2005) 등이 있다.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고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과 독일을 들 수 있다.⁵⁾ 영국과 독일의 제도는 다 같이 손익대체형의 범주 내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영국의 기업집단세제는 한 개별회사의 결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개별회사에 단순대체하고 각자 개별납세하는 제도(group relief)인 데 비하여, 독일의 기업집단세제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들 간의 손익통산약정(Ergebnisabführungsvertrag)을 통하여 종속회사(Organgesellschaft)의 모든 손익을 지배회사(Organträger)에 대체하고 그 결과 산정되는 연결과세소득에 대하여 지배회사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Organschaft)이다.

독일의 기업집단세제는 종속회사 손익의 전부가 지배회사에 대체되어 지배회사의 과세소득을 구성할 뿐 아니라 손익통산약정을 통하여 종속회사의 손익이 경제적 및 회계적으로도 지배회사에 귀속⁶⁾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기업집단세제는 연결납세형과 손익대체형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거나 양자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 대신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제도보다는 순수한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제도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5) 영국과 독일 이외에 OECD 국가들 중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등이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6)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지배회사에 손익통산약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제 III 장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제 IV 장에서는 영국의 결손이전제도를 살펴보고, 제 V 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기업집단세제를 비교하여 양자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제 VI 장에서는 이상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여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VII 장에서는 본 보고서를 요약하였다.⁷⁾

7) 김진수·이준규(2002)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중에서 어느 한 유형을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소득통산형을 도입하는 경우와 손익대체형을 도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도 기업 그룹세제로서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형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김진수·이준규(2002)의 후속 연구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이전의 연구에서 이미 논의하였던 부분은 상당부분 생략하였다.

II.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

1. 선행연구 검토⁸⁾

가. 김찬섭의 연구

김찬섭(1999)은 우리나라의 세제 및 회계환경 등의 기본적인 여건 내에서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이 가능한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실태를 분석하고 연결회계제도의 이론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의 기업집단세제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입시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집단세제의 유형의 선택은 소득통산형으로 한다. 둘째, 기업집단세제의 적용범위로 외국자회사는 제외하고 지주비율은 100%가 좋을 것이다. 셋째, 기업집단세제는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기업집단세제의 적용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회사가 모회사의 회계기준과 꼭 일치될 이유는 없다. 여섯째, 기업집단세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당해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과만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기업집단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매 수자측에 이연처리한 후 사후관리하도록 한다.

8) 김찬섭(1999), 이우택(2000), 한국공인회계사회(2001), 김종철·오윤택(2001)의 연구는 김진수·이준규(2002)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나. 이우택의 연구

이우택(2000)은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세환경상의 논점들을 규명하고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의 기업집단세제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세제 자체의 내용과 구성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첫째, 기업집단세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면 우선적으로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에 장애가 되거나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요인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집단세제는 개별의 법인세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에 앞서 법인세제의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집단세제의 형태는 미국식의 소득통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구체적인 기업집단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기업집단세제의 적용은 처음에는 100% 기준으로 출발하면서 필요시 100% 미만도 인정하는 탄력적인 기준으로 한다. 2) 기업집단세제의 가입을 선택적으로 하고 차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한다. 3) 기업집단세제는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 4)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간 결손금의 상쇄를 인정하되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미국의 세제와 같이 제반 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5) 내부거래 손익의 소거에 있어서는 처음 도입하는 데 따른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단순한 고정자산의 내부손익의 소거에서 출발하고 차차 시행과정에서 재고자산의 내부거래손익을 제거하도록 한다.

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2001)는 기업집단세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기업집단세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이스라

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등의 기업집단세제를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세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집단세제의 유형 선택은 연결회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으로 한다. 둘째, 기업집단세제의 적용대상 자회사의 지분비율은 80% 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기업집단의 기업집단세제의 적용에 관한 강제성 여부는 임의 선택하도록 한다. 넷째, 기업집단세제의 연결납세액을 기업집단 내 회사 간에 배분하는 문제는 일정한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각사가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신고한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자본출자 또는 배당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다섯째, 기업집단세제 적용의 계속성 여부는 연결대상 구성회사의 개별적인 탈퇴를 금지하고, 기업집단세제를 선택한 그룹의 연결정지 및 취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상계처리되는 결손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세제의 적용 전 개별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세제의 적용 후 소득에서 상계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나, 합병시 허용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제도와 같이 특정한 이월결손금은 기업집단세제의 적용 후 당해 회사에서 발생된 과세소득의 범위 내에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 김종철·오윤택의 연구

김종철·오윤택(2001)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기업집단세제의 발전과정과 제도적 특징을 분석·평가하여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적합한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집단세제의 유형의 선택은 소득통산형으로 한다. 둘

째, 기업집단세제 적용의 강제성 여부는 임의 선택하도록 한다. 셋째, 해외자회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자회사의 가입은 5년 이상 계속 적용한다는 조건하에 임의 선택하도록 한다. 넷째, 연결납세는 5년간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사업연도를 통일한다. 여섯째, 기업집단세제의 적용대상 자회사의 지분비율은 100%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점차 낮춘다. 일곱째, 소수주주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별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비상각자산인 토지와 관계회사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내부거래로 하며, 내부거래의 손익은 양도자가 인식하고 과세이연시켜서 소수주주와 채권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한다. 열째, 그룹 내부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열한째, 개별법인의 운영과 관련이 많은 접대비 등은 개별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룹 전체의 비용의 성격이 강한 기부금 등은 모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열두째, 결손법인을 포함하여 기업집단세제의 연결납세액을 배분하도록 한다.

마. 김광윤의 연구

김광윤(2002)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기업집단세제의 핵심과제를 비교·분석하고 조세정책담당자, 납세자, 세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업집단세제의 골격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집단세제의 유형의 선택은 소득통산형으로 한다. 둘째, 기업집단세제의 적용범위는 지분비율 50%를 초과하는 자회사로 하되 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 셋째, 요건을 갖춘 기업집단에는 기업집단세제의 채택을 의무화한다. 넷째, 기업집단의 회계연도와 회계정책은 통일한다. 다섯째, 소수주주권 보호장치를 둔다. 여섯째, 자회사의 중도탈퇴시에는 불이익을 준다. 일곱째,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대상

자산은 재고자산,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으로 하고 연결신고 전 이월 결손금의 연결후 공제는 당해 개별회사의 과세소득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여덟째, 연결결손금의 공제기간은 소급공제 3년 이월공제 5년으로 하되 기업집단세제의 위장 채택시 결손금 공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도록 한다. 아홉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기업집단세제하에 재규정하며, 기업집단세제의 연결세액의 배분관련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열째,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은 세무행정을 간소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가 다소 감소되더라도 연결부가세(surtax)의 부과는 불필요하다.

바. 김진수·이준규의 연구

김진수·이준규(2002)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소득통산형과 손익 대체형 중에서 어느 한 유형을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소득통산형을 도입하는 경우와 손익대체형을 도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결범위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1) 기업집단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비율 100%로 해야 한다. 2) 지주비율을 충족하는 자회사 모두를 기업집단세제의 적용을 받도록 강제하지 않고 원하는 자회사만 기업집단세제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반드시 모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만 기업집단세제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외국자회사는 기업집단세제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모·자회사 간에 단년도만 연결납세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집단세제의 적용을 계속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사업연도의 대응기간에 안분하여 손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과세연도를 통일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구성회사별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넷째, 손익대체 방법은 자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을 모회사로 이전하여 모회사의 손실 또는 이익과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도록 한다. 다섯째,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세액이 결정되면 모회사가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자회사의 이익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모회사의 손실과 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경우는 자회사도 연대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회사의 손실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모회사의 이익과 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경우 자회사는 연대납부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통산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집단세제의 범위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1) 기업집단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모두 연결납세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2) 외국자회사는 기업집단세제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초기에는 지주비율을 100%로 한정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집단세제의 적용여부를 기업집단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계속 적용을 의무화하고 만일 기업집단세제의 계속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기업집단세제를 적용하였던 기간의 연결납세를 취소하고 개별기업에 대해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과세연도를 통일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 회사에 따라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넷째, 소득통산의 방법은 먼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개별과세소득에 대하여 연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고, 연결계산에 필요한 수정이 가해진 개별과세소득의 합산액에 연결조정을 가하여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하며, 이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결산출세액에서 연결기준으로 계산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연결세액을 산정하며 당해 연결세액을 개별법인에 배분한다. 다

셋째, 재고자산을 포함한 모든 내부거래를 내부거래손익의 이연대상에 포함하고,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을 채택한다. 여섯째, 연결결손금의 처리는 결손이 과세소득보다 커서 통산의 결과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세액은 0이 되고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일곱째, 자회사의 장부가액의 수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연결세액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의 모회사가 납세의 무자가 되고 기업집단의 구성회사들은 연대납부를 지도록 한다. 아홉째, 지주비율을 100%로 하는 경우에는 연결부가세의 부과가 필요 없고, 지주비율을 80%나 95%로 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에 추가하여 연결부가세를 1%포인트 정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 신찬수의 연구

신찬수(2005)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일본의 기업집단세제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세무전문가, 기업의 실무자, 조세정책담당자, 세무학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업집단세제의 형태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집단세제의 유형의 선택은 소득통산형으로 한다. 둘째, 기업집단세제의 적격주체는 내국영리법인에 한하며 순수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배제한다. 셋째, 기업집단세제의 적용범위는 지분비율 100%의 자회사로 한다. 넷째, 기업집단세제의 선택방식은 기업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회사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투자수정은 세무행정의 단순화를 위해서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행하도록 한다. 여섯째, 모회사와 자회사 간 조세채무의 배분기준은 세법상 명확하게 규정한다. 일곱째, 연결결손금의 공제기간은 5년으로 한다. 여덟째, 내재손실은 연결시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연결후 일정

기간 이내에 대상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아홉째, 내부거래손익의 조정은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을 채택한다.

2. 기업집단세제 도입유형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김진수·이준규(2002) 이외의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나라에 도입할 기업그룹세제로서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소득통산형 및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차이점을 설명할 뿐, 소득통산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을 전제로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김진수·이준규(2002)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중에서 어느 한 유형을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소득통산형을 도입하는 경우와 손익대체형을 도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도 기업그룹세제로서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비교적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할 기업그룹세제로서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표 II-1>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유형 비교

연구자	도입유형
김찬섭(1999)	소득통산형
이우택(2000)	소득통산형
한국공인회계사회(2001)	소득통산형
김종철·오윤택(2001)	소득통산형
김광윤(2002)	소득통산형
김진수·이준규(2002)	소득통산형·손익대체형
신찬수(2005)	소득통산형

Ⅲ. 미국의 기업집단세제⁹⁾

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1917년에 처음 도입되어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우선 미국에서 연결납세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미국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전비조달을 위하여 초과이익세(excess profits tax)를 과세하게 되었고 초과이익세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누진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소득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적용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의 판단에 의해 강제 적용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 후 초과이익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는 강제적용방식으로부터 기업의 선택에 의한 임의 적용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강제적용에서 임의선택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소득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신고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절세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하여는 연결납세신고가 허용되지 않았고 연결납세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 바 있다. 때로는 연결납세신고를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고 채택

9)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결손대체제도와 비교할 목적으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하기로 한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이준규(2003)를 참조하기 바란다.

된 경우도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미국 의회(Congress)와 재무부(the Treasury)는 연결납세제도가 합리적인 경제적 논리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정 사업을 법인 내의 사업부로 영위하는 것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영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진보된 관점은 1960년대에 들어 2%의 연결가산세 폐지와 조세혜택의 적용요건 완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단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면 세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연결납세의 계속적용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연결납세를 중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연결납세에 관한 정책이 종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1966년의 연결납세규정의 특정 조항들을 이용한 조세회피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 조항 중 일부는 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정되고 다른 일부는 연결납세규정의 범문과 배치되는 판례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1984년에는 연결납세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요건이 80% 이상 의결권 보유뿐 아니라 80% 이상 지분소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을 행사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 후에 동일한 결손의 국내외에서 동시사용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손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E&P의 특별조정, 특정 목적의 자회사가 우선주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결결손을 이용하는 것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IRC에 도입되었다. 또한 연결납세규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재무부에 연결납세에 관한 시행령(연결납세규칙)을 제정하고 필요할 때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법원은 미국 재무부의 입법권한에 제한을 가해 왔으며 때로는 자의적이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거나 법률의 취지 또는 문언에 위배되는 규정들을 무효화시켰다. 이와는 반대로 법원은 특정 연결납세규칙이 일반 법률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연결납세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과거의 판례 등을 신뢰하고 법문언과 다르게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는 좌절을 맛보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결납세규칙은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관계회사집단은 연결납세사업연도종료일이 아니라 연결납세신고기한 현재의 규칙에 의하여 과세된다. 입법의 편의상 미국 재무부는 연결납세기한인 3월 15일 직전에 연결납세규칙을 개정해 왔으며 이렇게 개정된 규칙이 즉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역(歷)에 의한 1년을 사업연도로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규칙이 소급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종전의 규칙을 기초로 행해진 거래의 세무상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2. 연결납세의 대상

가. 연결납세집단과 관계회사집단

연결납세집단(consolidated group)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tax year)에 연결납세신고를 하거나 연결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계회사집단¹⁰⁾을 말하며 관계회사집단(affiliated group)¹¹⁾에 속하는 개별 법인을 구성법인(member)이라고 한다.¹²⁾ 관계회사집단이라 함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소유관계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연쇄적 법인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은 공통의 모회사(common parent company)¹³⁾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회사(subsidiary)¹⁴⁾로

10) Reg.§ 1.1502-1(h).

11) 미국 재무부가 제정한 연결납세규칙에서는 관계회사집단을 “집단(group)”으로 정의하고 있다(Reg.§1.1502-1(a)).

12) Reg.§ 1.1502-1(b).

13)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주식소유관계의 최정점에 있는 하나의 법인을 말한다.

구성된다.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법인 간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80% 이상을 지배하는 모자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구성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관계회사가 될 수 있는 법인(includable corporations)”이어야 한다.¹⁵⁾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80% 이상을 지배하는 모자관계

관계회사집단은 80% 이상을 지배하는 모자관계의 법인으로 구성된다. 즉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간에는 다음과 같은 주식소유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직접 출자관계에 의한 모자법인(母子法人, parent-subsidiary corporate group)이어야 하며 동일한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지만 서로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형제자매법인(brother-sister corporate group)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둘째, 자회사 의결권의 80% 이상을 소유하는 동시에 자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본 보고서에서 이를 “80% 이상 소유기준”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셋째, 공통의 모회사는 “80% 이상 소유기준”을 충족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직접 소유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법인은 다른 구성법인이 단독 또는 합동으로 “80% 이상 소유기준”을 충족하도록 소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다.

“80% 이상 소유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종업원지주제도에 의하여 임직원이 보유하는 주식도 총주식과 보유주식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식은 총주식과 보유주식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계산한다.¹⁶⁾

14)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공통의 모회사를 제외한 모든 법인을 말한다.(Reg. § 1.1502-1(c))

15) IRC section 1504(a)(1) & (2).

16) IRC section 1504(a)(4).

- ① 의결권이 없을 것
- ② 배당에 대하여 비참가적 비누적적일 것
- ③ 주식상환 또는 법인청산시 주주에게 교부되는 가액이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단, 주식상환 또는 법인청산에 대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할증액은 제외)
- ④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

IRC에서는 “80% 이상 소유기준”에 관한 규정을 남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이를 위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IRC에서는 재무부에 위임한 규칙제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하고 있다. 이 열거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¹⁷⁾

- ① 주식인수보증권(stock warrants), 전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전환증권을 주식으로 보거나 특정 주식을 주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
- ② 주식매매옵션(options to acquire or sell stock)을 행사된 것으로 보는 규정
- ③ 주식시가의 80% 이상 보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집단이 주식의 시가를 선의(good-faith)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신뢰하도록 하는 규정
- ④ 주식시가의 80% 이상 보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종류 간의 상대적 시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당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하는 규정
- ⑤ 특정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성법인 간의 주식이전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 ⑥ 의결권의 변동이 주식시가의 상대적인 변동에 비례하지 아니하

17) IRC section 1504(a)(5).

는 경우에 당해 의결권의 변동을 무시하도록 하는 규정

다. 연결제외법인의 5년간 재연결 제한

연결납세신고를 하던 관계회사집단의 특정 구성법인이 주식소유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80% 이상 소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당해 법인은 그 제외된 사업연도 후 61월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더라도 연결납세신고시의 구성법인으로 포함될 수 없다.¹⁸⁾ 이 규정의 취지는 소득이 발생하는 자회사를 결손이 발생하는 관계회사집단에 매각하여 당해 관계회사집단이 당해 소득을 결손의 공제에 사용하게 한 후 다시 당해 자회사를 취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당초 연결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5년(60월)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강제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당해 5년이 경과한 직후에 당해 자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다.¹⁹⁾

라. 관계회사가 될 수 있는 법인

“80% 이상 보유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IRC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가 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관계회사가 될 수 없는 법인으로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 생명보험회사, 외국법인, 미국점령지에서 사업하는 법인, 특정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신탁회사, 해외판매 내국법인, 조합과세법인이 있다.²⁰⁾ 또한 철도터미널법인(terminal railroad

18) IRC section 1504(a)(3)(A).

19) Crestol et al.(2002), p. 2-10.

corporation)은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는 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구성법인은 될 수 없다.²¹⁾

3. 연결납세의 선택 및 중지

가. 연결납세의 선택

관계회사집단은 법인세에 관하여 법인들이 개별적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대신 연결납세를 할 수 있는 특권(privilege)을 가진다.²²⁾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당연하게 연결납세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과 같이 계속 개별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개별납세신고를 하던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기 위하여는 관계회사집단의 모든 구성법인이 IRC section 1502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연결납세규칙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²³⁾

연결납세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IRC)에서 이를 자세히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개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행정부에 그 자세한 사항의 입법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IRC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재무부장관은 연결납세를 하는 관계회사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개별법인의 법인세액을 명확하게 신고, 결정, 계산, 부과, 징수, 수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20) IRC section 1504(b).

21) IRC section 281(d).

22) IRC section 1501.

23) IRC section 1501, Reg.§ 1.1502-75(a)(1).

24) IRC section 1502.

나. 선택 이후의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신고를 한 관계회사집단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계속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즉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²⁵⁾ 이러한 계속적용의 요건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회사 중 일부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연도에만 연결납세신고를 하고 모든 구성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등 자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연결납세의 중지

국세청장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결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통의 모회사가 당해 법인의 연결납세신고를 중지하고자 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그 중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결납세신고의 중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결납세신고의 중지를 위한 신청서는 최소한 연결납세신고기한의 90일 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당해 법률의 개정일 전 또는 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중지신청서를 당해 법률의 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장이 연결납세중지를 승인하면 연결납세신고를 마친 후에도 그 승인의 효력이 있다.²⁶⁾

25) Reg. § 1.1502-75(a)(2).

26) Reg. § 1.1502-75(c)(1)(i).

4. 사업연도

가. 연결납세 사업연도

연결납세는 당해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한다.²⁷⁾ 따라서 연결납세집단의 사업연도²⁸⁾는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또한 연결납세를 하는 관계회사집단의 자회사는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를 채택하여야 한다.²⁹⁾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이 최초로 연결납세를 하는 때 자회사들은 사업연도를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연결납세에 있어서 자회사의 사업연도를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와 일치시키는 것이 강제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회사의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³⁰⁾

나.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소득

공통의 모회사를 포함하여 연결납세집단에 속하는 모든 구성법인의 소득(양도손익,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 포함)은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을 연결납세에 포함하여야 한다.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중에 관계회사집단이 새로이 성립한 경우에도 공통의 모회사의 소득은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하기 전의 소득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연결납세에 포함된다.

27) Reg.§ 1.1502-76(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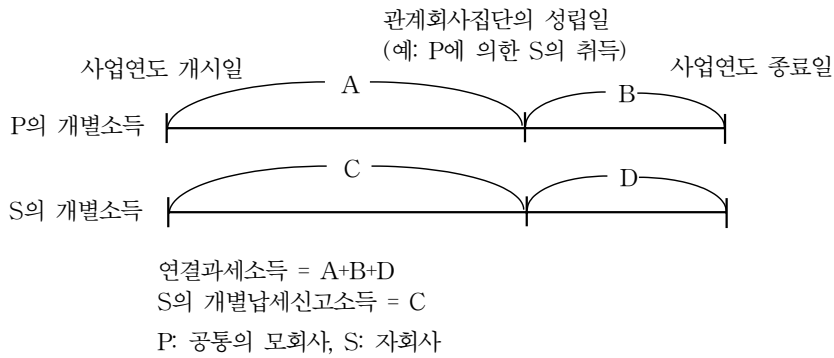
28) 연결납세집단의 사업연도를 연결납세사업연도(consolidated return year)라고 한다(Reg.§ 1.1502-1(d)). 이에 대하여 개별납세사업연도(separate return year)라 함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법인의 사업연도 또는 다른 관계회사집단의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개별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Reg.§ 1.1502-1(e)).

29) Reg.§ 1.1502-76(a)(1).

30) Reg.§ 1.441-1T(b)(1)(ii)(D).

그러나 자회사가 연결납세사업연도중 일부의 기간에만 구성법인이었다면 자회사의 소득은 그 기간에 발생한 것만 연결납세에 포함되며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자회사가 별도로 개별납세하여야 한다.³¹⁾

[그림 III-1] 사업연도중 관계회사집단이 성립된 경우의 연결과세소득 예시



5. 회계처리방법

가. 원칙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은 개별납세를 할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³²⁾ 즉 연결납세를 하기 전에 개별납세를 하였을 때 적용하던 회계처리방법을 계속하여 연결납세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법인별로 연결납세 전에 적용하던 방법이 서로 달랐다면 회계처리방법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지 않는 한 연결납세하는 경우에도 구성법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

31) Reg. § 1.1502-76(b)(1)(i).

32) Reg. § 1.1502-17(a).

처리방법이 적용된다.

나. 조세회피방지규정

S와 B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한 법인 내의 서로 다른 사업부였다면 적용할 수 없었을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B가 다른 구성법인 S의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인수한 경우 B는 취득하거나 인수한 활동에 적용하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의 활동에 적용하던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³³⁾

예를 들어 용역업을 영위하는 P는 고객과의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A유형의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계약시 대금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B유형의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는 때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있다. 또한 P는 발생주의(accrual method)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수령일과 대금청구가능일 및 용역제공일 중 빠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고 있다. 이 경우 P가 회계처리방법을 현금주의(cash method)³⁴⁾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 S를 설립하고 S는 B유형의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회계처리방법으로 현금주의를 선택하며 P는 A유형의 용역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조세회피방지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S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없고 P가 사용하던 방법인 발생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³⁵⁾

33) Reg. § 1.1502-17(c)(1).

34) 현금주의는 미국의 세법상 일정한 요건하에서 회계처리방법으로서 인정된다.

35) Reg. § 1.1502-16(d) Ex.2.

6. 자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공통의 모회사

가. 대리의 범위

공통의 모회사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대한 유일한 대리인으로서 그 자신의 이름으로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조세채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동할 권한이 부여된다. 자회사는 조세채무에 관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는 그후의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용하며, 법인이 새로이 연결납세집단의 자회사가 되었거나 자회사가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였더라도 적용한다.³⁶⁾

나. 대리권 행사의 예시

공통의 모회사에 의한 대리는 다음과 같이 예시된다.³⁷⁾

① 연결과세소득의 산정을 위한 개별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자회사에 가능한 선택은 공통의 모회사에 의하여 정해지며 종전에 자회사에 의하여 행해진 선택에 대한 변경도 마찬가지이다.

② 자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한 모든 서류는 공통의 모회사에 직접 송달되며 공통의 모회사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포함한 모든 기한연장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한다.

③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과세처분통지서(notices of deficiencies)와 고지서는 공통의 모회사에만 송달되며 공통의 모회사에 송달되면 연결납세집단의 각 자회사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공통의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리하여 조세법원에 불복청구하는 경우 자회사가 청구한 것으로 본다.

36) Reg. § 1.1502-77(a).

37) Reg. § 1.1502-77(a).

⑤ 공통의 모회사는 자회사를 대리하여 세액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신청을 하며 세액은 공통의 모회사에 그의 이름으로 환급된다. 공통의 모회사에 환급되면 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채무가 소멸한다.

⑥ 공통의 모회사는 자회사를 대리하여 그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보증하거나 과세당국과의 최종합의(closing agreement)를 실행하며 이는 자회사의 행위로 본다.

다. 자회사의 이름으로 송달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의 송달은 공통의 모회사에 하지 아니하고 각 자회사에 하여야 한다.³⁸⁾

①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중 구성법인이었던 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세액과 관련한 과세처분통지서(notice of deficiencies)

②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중 구성법인이었던 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세액과 관련한 고지서(notice and demand for payment of taxes)

③ 고지세액의 징수 및 체납처분

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권리는 공통의 모회사가 대리할 수 없다.³⁹⁾

① 연결납세 여부의 선택

② 점령지세액공제(Puerto Rico and possession tax credit)의 선택⁴⁰⁾

38) Reg. § 1.1502-77(a).

39) Reg. § 1.1502-77(a).

③ 해외판매내국법인(A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DISC)으로 간주될 것인지 여부의 선택⁴¹⁾

④ DISC에 의한 회계기간의 변경여부의 선택⁴²⁾

마. 공통의 모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공통의 모회사가 해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해산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그 존재가 소멸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구성법인이 공통의 모회사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할 수 있다.⁴³⁾

7. 연결세액의 납세의무

가. 연대납세의무

1) 일반원칙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와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중 일부 또는 전부의 기간 동안 구성법인이었던 자회사는 연결세액을 연대하여 연결납세신고기한(연장된 기한은 제외)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⁴⁴⁾

2) 연결이탈한 자회사의 납세의무

자회사의 주식이 시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매각 또는 교환됨에 따라 당해 자회사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세액이 경정되기 전에 발생하였다면 관

40) IRC section 936(e).

41) Reg. § 1.992-2.

42) Reg. § 1.991-1(b)(3)(ii).

43) Reg. § 1.1502-77(d).

44) Reg. § 1.1502-6(a).

할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자회사였던 법인에 경정세액 중 당해 법인에 배분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⁴⁵⁾ 즉 당해 법인은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3)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경감약정의 효과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간 또는 구성법인과 다른 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각 구성법인에 대한 연결세액의 연대납세의무를 경감할 수 없다.⁴⁶⁾

나. 연결추정세액의 예납

1) 일반원칙

연결납세집단이 2개의 연속적인 사업연도에 걸쳐 연결납세신고를 한다면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별납세로 전환될 때까지 연결기준으로 세액을 추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초의 2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연결기준 또는 개별기준 중 선택하여 추정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⁴⁷⁾ IRC에 의하면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신고한 연간 세액을 기준으로 매 분기별로 25%씩을 추정세액으로서 납부하여야 한다.⁴⁸⁾

2) 추정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

최초의 2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추정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액 납부방법과는 관계 없이 연결기준 또는 개별기준 중 연결납세집단이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에는 연

45) Reg. § 1.1502-6(b).

46) Reg. § 1.1502-6(c).

47) Reg. § 1.1502-5(a).

48) IRC section 6655.

결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⁴⁹⁾

다. 연결세액의 배분

1) 연결납세규칙상의 배분방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은 연결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구성법인이 집합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는 구성법인 간 세액의 배분과 관계 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연결세액을 구성법인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 또는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구성법인에 배분되는 연결세액은 당해 법인의 E&P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결세액의 배분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연결세액을 구성법인 간에 어떻게 배분하여 납부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각 구성법인의 E&P에서 차감될 연결세액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연결납세집단은 E&P를 산정할 목적으로 선택한 연결납세규칙상의 세액배분방법에 따라 배분된 세액을 각 구성법인이 납부할 수도 있고 E&P 산정목적의 세액배분방법과 다르게 배분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즉 구성법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세액분담 약정을 맺기도 하고 공통의 모회사가 일방적으로 세액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이익의 귀속

(1) 사법부 판단의 기준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의 이익이 어느 구성법인에 귀속될 것인

49) Reg. § 1.1502-5(b).

지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검토하기로 한다. 즉 연결납세기 사용된 결손 등의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액감소의 이익이 결손 또는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구성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 있는 구성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은 통일적이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점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 ① 판단의 기준은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을 얻었는지 여부이다.
- ② 각 구성법인의 이사회가 내린 사업상의 판단(business judgement)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E&P 산정목적의 세액배분방법이 연결납세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이익이 결손법인 또는 이익법인 중 어느 편에 귀속될 것인지를 규정하는 IRC 또는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2) 판례

모회사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세액감소이익 배분약정이 없는 구성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⁵¹⁾가 있는 반면에 세액감소이익 배분약정이 없더라도 결손의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액이 모회사가 아닌 결손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례⁵²⁾도 있다. 이 두 판례는 서로 상충하는 것 같으나 전자의 판례는 당해 결손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결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후자의 판례는 당해 결손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결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이므로 상반되

50) Crestol et al.(2002), pp. 7-59~7-60.

51) Meyerson v. El Paso Natural Gas Co., 246 A2d 789(Del. Ch. 1967), Crestol et al.(2002) p. 7-60에서 재인용.

52) In re Richards Chrysler-Plymouth Corp., 473 F2d 262(9th Cir. 1973), cert. denied, 412 US 919(1973), Crestol et al.(2002) p. 7-60에서 재인용.

는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자의 판례에서는 모회사가 결손법인에 세액감소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에 부담한 부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것이다.

8.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가. 세액계산구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세액은 연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연결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또한 연결과세표준은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할 항목과 수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계산과정은 [그림 III-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III-2] 연결납세액의 계산과정

-
-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의 합계
 - ± 개별과세소득산정시 적용하였던 연결재계산항목의 제거
 - ① 결손금공제(net operating loss deduction)
 - ② 자본손익(capital gains and losses)
 - ③ 사업용자산처분손익(section 1231 gains and losses)
 - ④ 자선기부금공제(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
 - ⑤ 폐지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구교역법인공제
(Western Hemisphere trade deduction)
 - ⑥ 수입배당공제
 - ⑦ 지급배당공제
 - ± 연결수정항목
 - ①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또는 인식(Reg.§ 1.1502-13)
 - ② 내포손실의 공제제한(Reg.§ 1.1502-15)
 - ③ 탐광비 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16)
 - ④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Reg.§ 1.1502-17)

⑤ 재고수정(Reg.§ 1.1502-18)
⑥ 초과손실계정으로 인하여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Reg.§ 1.1502-19)
⑦ 기초가액 및 E&P와 관련한 수정(Reg.§ 1.1502-31~33)
⑧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감모상각의 한도초과 불공제 (Reg.§ 1.1502-44)
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손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42)
⑩ 자회사 주식의 처분 또는 연결납세집단의 이탈에 대한 손실의 불인정 또는 기초가액의 감액(Reg.§ 1.1502-20)
⑪ 구성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의 제한 (Reg.§ 1.1502-11(b))
= 수정된 개별과세소득(Reg.§ 1.1502-12)
± 연결재계산항목의 연결기준 재계산액 가감
= 연결과세소득(Reg.§ 1.1502-11)
× 법인세율
=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 기타 법인세(인적지주회사세 또는 유보이익세 등)
= 연결산출세액
- 연결사업세액공제
-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
연결세액(Reg.§ 1.1502-2)

나. 결손금

1) 연결결손금공제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적용할 연결결손금공제(the Consolidated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CNOL deduction)는 연결납세집단의 결손금과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성법인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액과 소급공제액의 합계이다.⁵³⁾ 연결결손금의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는 개별 법인의 결손금 공제에 관한 IRC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결손금은 과거 2년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되거나, 향후

⁵³⁾ Reg.§ 1.1502-21(a).

20년간의 소득에서 이월공제된다.⁵⁴⁾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공제된다.⁵⁵⁾

연결결손금을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 또는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연결결손금 중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amount of CNOL attributable to a member)을 당해 법인에 배분하여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결결손금”이라 함은 연결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구성법인의 개별결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말한다.⁵⁶⁾ 따라서 연결결손금은 연결납세집단의 입장에서는 단일 금액으로 관리되지만 연결이탈 또는 개별납세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구성법인별 귀속액이 별도로 관리된다. 즉 연결결손금 중 구성법인별 귀속액으로서 연결납세집단이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 또는 소급하여 공제될 수 있다.

법인의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특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경우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연결결손금의 금액은 당해 구성법인이 설립되기 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소급되어 공제될 수 있다. 또한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공통의 모회사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소급공제된다.⁵⁷⁾

- ① 공통의 모회사가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 경우
- ② 결손금이 소급공제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다른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인 경우

54) IRC section 172(b)(1)(A).

55) Reg. § 1.1502-21(b)(1).

56) Reg. § 1.1502-21(b)(2)(iv).

57) Reg. § 1.1502-21(b)(2)(ii)(B).

2) 개별납세제한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제한

(1) 개별납세제한연도

개별납세제한연도(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SRLY)라 함은 구성법인(a member) 또는 구성법인에 자산을 양도 또는 분배한 법인(a predecessor of a member)⁵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를 말한다.⁵⁹⁾ SRLY제도는 결손금의 공제 또는 이월세액공제의 적용 등을 목적으로 결손기업을 취득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SRLY는 그 중 하나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내포손실공제제한, 모회사의 지분변동에 따른 규제, 역취득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아니함에 따른 개별납세 사업연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SRLY로 보지 아니한다.⁶⁰⁾

- ① 조세특성(tax attribute)⁶¹⁾이 이월 또는 소급되는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공통의 모회사인 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역취득의 경우 제외)
- ②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이었던 법인의 당해 개별납세 사업연도
- ③ 자산을 구성법인에 양도 또는 분배한 법인이 개별납세 사업연도

58)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구성법인에 자산을 양도 또는 분배한 법인을 말한다(Reg. § 1.1502-1(f)(4)).

- ① 청산에 따른 분배, 피합병, 주식과 자산의 교환 등을 통하여 이월결손금 등이 자산을 양수한 법인에 승계(IRC section 381(a))되는 경우
- ② 자산을 양수 또는 분배받는 법인의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양도 또는 분배하는 법인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자산의 기초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 한함)

59) Reg. § 1.1501-1(f)(1).

60) Reg. § 1.1501-1(f)(2).

61) 이월결손금, 미사용 이월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의 전 기간에 걸쳐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개별납세 사업연도

(2) SRLY에 대한 결손금공제의 제한

특정 구성법인의 SRLY에 발생한 결손금의 소급 또는 이월공제의 누적액은 당해 구성법인의 손익만에 의하여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의 누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한다.⁶²⁾

- ① 연결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 ②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집단이 실제로 포함시킨 당해 구성법인의 손비(자본손실 포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연결납세 사업연도는 당해 구성법인이 계속적으로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사업연도(결손이 이월되거나 소급되는 사업연도 포함)만을 말한다. 다만, 이월공제에 있어서 결손이 이월되는 사업연도 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소급공제에 있어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 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 ④ 내포손실의 공제배제⁶³⁾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내부거래손익

1) 개요

내부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는 당해 거래 직후를 기준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 거래를 말한다.⁶⁴⁾ 연결납세제도가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기업들의 집단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결납세집단

62) Reg. § 1.1501-21(c)(1)(i).

63) Reg. § 1.1502-15.

64) Reg. § 1.1502-13(b)(1)(i).

의 구성법인 간의 내부거래가 연결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결납세규칙에서의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의 목적은 당해 내부거래로 인하여 연결과세소득 또는 연결세액이 증감되거나 손익의 귀속시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⁶⁵⁾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에서는 당해 내부거래의 당사자인 매출자(selling member; S)⁶⁶⁾와 매입자(buying member; B)⁶⁷⁾를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 경우(개별실체기준; separate entity treatment)도 있고 동일한 법인의 사업부로 보는 경우(단일실체기준; single entity treatment)도 있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당해 자산처분손익은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B는 자신의 취득원가를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내부손익(intercompany items)과 대응손익(corresponding items)의 귀속시기, 유형, 원천, 특성은 거래 당시에는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더라도 단일실체기준을 적용하여 재결정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토지를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각하고 B가 이를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에 매각하였다면, S의 매각이익은 B가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인식되지 아니한다.⁶⁸⁾

2) 내부거래의 유형

내부거래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⁶⁹⁾

① 자산양도: S가 B에게 자산을 매각, 교환, 무상양도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거래로 인하여 S가 손익을 인식하였는 지와는 관계 없이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65) Reg.§ 1.1502-13(a)(1).

66)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을 말하며 본장에서 “S”로 칭하기로 한다.

67) 자산을 양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을 말하며 본장에서 “B”로 칭하기로 한다.

68) Reg.§ 1.1502-13(a)(2).

69) Reg.§ 1.1502-13(b)(1)(i).

② 용역제공: S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B는 S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손비를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임대 또는 대여 등: S가 B에게 기술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자산을 임대하거나 자금을 대여하고 B는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손비를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주에 대한 분배: B가 S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S가 B에게 자산 등을 분배⁷⁰⁾하는 것을 말한다.

3) 내부손익과 대응손익

(1) 내부손익

내부손익(intercompany items)이라 함은 내부거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S의 이익 또는 손실⁷¹⁾을 말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이익(intercompany gain)이다.⁷²⁾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S의 원가 또는 손비는 내부손익을 산정하는 데 가감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재고자산을 매각한 경우 당해 재고자산에 대한 S의 직접 또는 간접원가는 내부이익(intercompany income)을 산정하는 데 차감된다. 또한 S가 개별실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자산화(capitalization)되지 않는 관련 원가와 손비도 내부손익을 산정하는 데 가감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인건비는 내부이익계산시 차감되며, S가 B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도 내부이익계산시 차감된다.⁷³⁾

70) 미국 세법상 주주에 대한 분배(distribution)는 배당(dividend)과 출자의 반환을 포함한다.

71) 수익(income), 수익에서 공제되는 손비(deduction), 자산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이득(gain)과 손실(loss)을 포함한다.

72) Reg. § 1.1502-13(b)(2)(i).

(2) 대응손익

대응손익(corresponding items)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내부거래에서 발생하였거나 내부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B의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B가 S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B의 당해 임대료에 대한 손비공제는 대응손익이다. B가 S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한 경우 B의 자산처분손익은 대응손익이며 B가 당해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당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도 대응손익이다.⁷⁴⁾

4) 대등원칙과 촉진원칙

대등원칙과 촉진원칙은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 간의 내부거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손익의 인식금액과 인식시기를 규제하며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과 모회사 및 자회사의 E&P의 증감여부를 정한다.

대등원칙(matching rule)은 당해 내부거래의 당사자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단일 법인의 한 사업부라고 가정할 때의 조세효과와 내부거래로 인한 조세효과가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 간의 내부거래는 동일한 법인 내의 사업부 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외부의 제3자에게 처분 등으로 실현되는 때까지 손익의 인식을 이연한다. 그러나 동일 법인 내의 사업부 간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의 기초가액과 각 개별법인의 E&P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내부거래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⁷⁵⁾

73) Reg. § 1.1502-13(b)(2)(ii).

74) Reg. § 1.1502-13(b)(3)(i).

75) Reg. § 1.1502-13(c).

촉진원칙(acceleration rule)은 대등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을 중단하고 외부에 매각 등으로 내부거래손익이 실현되기 전에 앞당겨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즉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⁷⁶⁾

라. 내포손실

1) 개요

내포손실(built-in loss)은 공통의 모회사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IRC section 382(지분변동 후 내포손실공제의 제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금과 마찬가지로 SRLY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내포손실은 실제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SRLY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SRLY에 발생한 가상의 이월결손금으로 본다. 내포손실은 손비로서 허용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결손금의 이월 및 소급공제가 적용되기 전에 연결과세소득과 상계된다. 그러나 내포손실 중 손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으로 보며 그 인식되는 사업연도는 SRLY로 취급된다.⁷⁷⁾

2) 정의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⁷⁸⁾이 되는 날에 순미실현 내포손실⁷⁹⁾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내포손실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76) Reg. § 1.1502-13(d).

77) Reg. § 1.1501-15(a).

78)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79) 미실현 내포손실에서 미실현 내포이익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인식된 내포손실에 해당하는 경우 SRLY 제한의 적용하에 공제될 수 있다.⁸⁰⁾

미실현 내포손실(net unrealized built-in loss)이라 함은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자산의 시가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정기초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미실현 내포손실이 자산의 시가총액의 15%와 1천만달러 중 적은 금액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또한 자산 중 현금, 현금대용항목 및 시가가 수정기초가액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에서는 미실현 내포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⁸¹⁾

인식된 내포손실(recognized built-in loss)이라 함은 인식기간(recognition period) 내에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인식한 손실을 말한다. 이 경우 인식기간은 지분변동 후 5년 내의 기간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⁸²⁾

- ① 지분변동 직전에 내포손실을 가진 법인 이외의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처분손실
- ② 지분변동일 현재의 미실현 내포손실을 초과하는 처분손실

3) 내포손실공제제한의 하위집단별 적용

내포손실공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결손금공제에서와 같이 하위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위집단별로 적용한다.⁸³⁾

하위집단은 당해 손실을 인식하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종료하는 60월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관계회사였던 구성법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구성법인은 결손을 인식한 법인과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까지 하위집단의 구성법인으로 잔존하게 된다.⁸⁴⁾

80) Reg. § 1.1501-15(b)(1).

81) IRC section 382(h)(3).

82) IRC section 382(h)(2).

83) Reg. § 1.1501-15(c)(1).

84) Reg. § 1.1501-15(c)(2).

4) 공통의 모회사에 의하여 인식되는 내포손실

관계회사집단이 형성되는 때 공통의 모회사에 의하여 보유되는 자산에 대하여 인식되는 처분손실은 내포손실공제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통의 모회사가 될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을 형성하기 전에 이를 예견하고 미실현 내포손실이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⁸⁵⁾

마. 투자수정과 E&P

1) 투자수정

투자수정(investment adjustment)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P)이 자회사(S)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규정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제도로서 P의 기초가액이 S의 배당 및 손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수정의 목적은 연결과세소득이 연결납세집단의 소득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P와 S를 하나의 실체로 보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P가 100달러를 출자하여 S를 설립하였고 S가 10달러의 소득을 얻은 경우 P의 기초가액⁸⁶⁾ 100달러는 연결납세규칙에서의 투자수정규정에 따라 10달러 증가하는데, 이는 S의 소득에 대하여 한 번 과세하고 P가 S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이익에 대하여 한 번 더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S의 감면소득(tax-exempt income) 및 비자본 공제불능경비(noncapital, nondeductible expenses)에 대하여도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가액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⁸⁷⁾

S 주식에 대한 투자수정은 S의 상위법인의 주식(higher-tier stock)

85) Reg. § 1.1501-15(f).

86) IRC section 358(배당받은 자의 주식기초가액의 결정)에 의한 기초가액을 말한다.

87) Reg. § 1.1502-32(a)(1).

에 대한 투자수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하위법인으로부터 상위 법인으로 순서에 따라 투자수정을 한다. 예를 들어 P가 다른 법인의 자회사인 경우 S 주식에 대한 P의 투자수정은 그 다른 법인의 P 주식에 대한 투자수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⁸⁸⁾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적극적 수정(positive adjustment)에 의하여 증가하고 소극적 수정(negative adjustment)에 의하여 감소한다. 기초가액의 수정에 있어서 수정할 금액은 S의 과세소득 또는 결손, 감면소득, 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불능경비, 분배의 순액(net amount)으로 한다.⁸⁹⁾

2) 초과손실계정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의 손익 또는 배당 등에 따라 수정된다. 이 경우 소극적 수정이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S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이라고 한다.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s)은 부(-)의 기초가액으로 취급된다.

P가 S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P는 S의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⁹⁰⁾

3) E&P

(1) 개요

E&P(Earnings and Profits)라 함은 세무상 잉여금을 말하며 과세소득을 기초로 계산되는 당기배당가능소득이다. 법인이 E&P의 범위 내에서 분배한 금액이 배당(dividend)이 되고,⁹¹⁾ 법인주주에 관해서

88) Reg. § 1.1502-32(a)(3)(iii).

89) Reg. § 1.1502-32(b)(2) & (3).

90) Reg. § 1.1502-19(b)(1).

는 총소득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수입 배당공제)가 적용된다.⁹²⁾ 이에 반하여 법인의 E&P를 초과하는 분배는 배당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아니하고, 분배를 받는 주주의 주식의 기초가액에서 공제되어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때의 주식양도이익을 증가시키게 된다.⁹³⁾

E&P에 대하여는 IRC section 312(E&P에 대한 효과)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납세규칙에서 E&P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상위의 구성법인의 E&P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위의 구성법인의 E&P를 반영하고 공통의 모회사에서 연결납세집단의 E&P를 산정함으로써 P와 S를 하나의 실체로 보려는 것이다.⁹⁴⁾

P의 E&P는 기초가액의 수정에 관한 일반원칙⁹⁵⁾에 따라 S의 E&P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된다. 특정 사업연도의 P의 E&P에 대한 수정은 연결납세 사업연도말뿐 아니라 E&P의 결정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수정될 수 있다. 또한 S의 E&P는 기초가액의 수정에 있어서 주식 간 수정항목의 배분에 관한 원칙⁹⁶⁾에 따라 배분되며, 하위법인으로부터 상위법인의 순으로 수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가액의 수정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⁹⁷⁾

① P의 수정금액은 S의 과세 또는 면세항목이 아닌 S의 E&P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S의 사용되지 아니한 결손에 대한 소극적 수정의 이연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구성법인 간 연결세액의 배분에 관하여는 차후에 설명하는 별도

91) IRC section 316(a).

92) IRC section 61(a)(7) & 243.

93) IRC section 301(c).

94) Reg.§ 1.1502-33(a)(1).

95) Reg.§ 1.1502-32.

96) Reg.§ 1.1502-32(c).

97) Reg.§ 1.1502-33(b)(1).

의 세액분담규정을 적용한다.

(2) E&P 계산을 위한 연결세액의 배분

각 개별 법인의 E&P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액은 공제되는 항목⁹⁸⁾이기 때문에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연결세액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E&P 계산시 적용되는 연결세액의 배분기준은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된 배분기준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E&P 계산시 적용될 수 있는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은 IRC와 연결납세규칙에서 여러 가지가 허용되고 있으며 특정 구성법인의 결손금 등의 조세혜택이 연결세액산정시 사용되었을 때 다른 구성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배분방법과 대가를 지급하는 배분방법으로 구분된다. 구성법인 간에 조세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배분방법으로는 개별소득비례배분법, 개별세액비례배분법, 증가세액추가배분법 및 기타 다른 배분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는 방법이 있으며⁹⁹⁾ 구성법인 간에 조세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배분방법으로는 사후정산법(wait-and-see method), 비율법(percentage method) 및 기타 다른 배분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는 방법이 있다.¹⁰⁰⁾

연결납세집단은 연결납세신고를 최초로 하는 때 앞서 열거한 배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고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배분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연결납세집단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득비례배분법에 의하게 된다.¹⁰¹⁾

98) Reg.§ 1.1552-1(b)(2).

99) Reg.§ 1.1552-1(a)(4).

100) Reg.§ 1.1502-33(d)(4).

101) IRC section 1552(b).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별로 E&P 계산시 차감되는 연결세액의 배분액보다 세액분담약정에 따른 실제 세액부담액이 더 큰 경우의 차액은 자본의 출자(capital contribution) 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distribution)로 본다.¹⁰²⁾ 즉 자회사에 배분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자회사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보며, 자회사가 자신에게 배분된 세액을 초과하여 모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주주에 대한 분배(일반적으로 배당)로 취급되고 E&P를 감소시킨다.¹⁰³⁾

102) IRC section 1552, Reg. § 1.1502-33(d)(1)(ii).

103) Crestol et al.(2002), pp. 7-57~7-58.

IV. 영국의 기업집단세제

1. 기업집단세제의 도입과정

영국의 세법은 수개의 법인이 지분관계로 결합하여 하나의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에 속한 각 법인을 독립된 납세주체(separate legal person)로 취급하고 있다. 기업집단세제는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특례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 결손이전제도(group relief¹⁰⁴)가 대표적이다. 또한 결손이전제도의 변형으로서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consortium relief)가 있는데 이 두 제도는 자본자산 처분손실(capital loss) 이외의 결손을 이전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득·법인세법(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ICTA)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특정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자산거래시 양도손익의 인식을 이연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에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의 상계가 가능해진다. 영국세법상 자본이득 및 손실의 계산에 관하여는 ICTA가 아닌 자본이득세법(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TCGA)에 규정되어 있다.

결손이전제도는 1967년에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는 과거의 두 가지 형태의 조세부담의 경감제도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우선 1953년부터

104) group relief를 선행연구들에서는 영어 그대로 그룹릴리프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서 결손이전제도라고 부르기로 한다.

결손이전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존재해왔던 감면납부제도(subvention payments)는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결손을 보전해주는 경우 그 다른 기업의 결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면납부제도는 다른 기업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보전해 주어야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1936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 동안 영국의 기업들에는 소득세(income tax)와 이윤세(profit tax)가 동시에 과세되었는데 이 중 이윤세는 연결기준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진부담을 줄이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1965년 법인세가 도입되면서 감면납부제도와 이윤세의 연결기준납세제도는 폐지되고 이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967년 결손이전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2. 결손이전제도(Group Relief)¹⁰⁵⁾

가. 결손이전제도의 특징

영국의 기업집단세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통산하여 산출한 연결과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반면 영국의 기업집단세제의 특징은 기업집단이 다수의 독립적이고도 분리된 기업들로 구성된 것이라는 가정을 유지하고, 다만 각 개별기업들 상호간에 결손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가정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손이전제도는 영국의 기업집단세제의 핵심이다. 결손이전제도는 기업집단 내의 소득계상회사(claimant company; 결손양수법인)가

105) 본질은 松宮信也(2002), Sue Whiting(2004), CCH(2003)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기업집단 내의 다른 결손계상회사(surrendering company; 결손양도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사업결손 등을 이전받아 자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결손이전제도는 법인마다 소득을 확정시킨 결과로서 발생한 한 법인의 결손과 다른 법인의 소득을 상계하도록 하는 단년도형 기업집단 내 손익대체제도로써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세법에서 정하는 조정을 가감하여 연결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와는 계산구조가 다르다. 즉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내부 미실현 이익과 내부 거래의 소거절차는 불필요하며 과년도 이월결손금은 결손이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집단에 가입되기 전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복잡한 규정도 없다.

영국 세법에서 법인의 소득은 발생원천에 따라 스케줄(schedule)이라는 구분으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스케줄 간의 소득과 결손의 상계 및 결손의 소급적용이나 이월 등에 대해 복잡한 규칙이 있다. 영국 세법상 스케줄제도에 의한 소득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edule A 임대소득(Profits from rents)

Schedule D

Case I 사업소득(Profits of a trade)

Case III 수입이자(Interest received)

Case V 해외자산소득(Income from foreign possessions)

Case VI 기타 위 이외의 과세소득

영국의 스케줄제도는 결손이전의 적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제도를 복잡하게 한다. 자본손실은 결손이전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결손(Schedule D Case I loss)은 동일 법인 내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에 결손이전제도에 의해 타 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

한편 결손이전제도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선택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 결손이전제도의 적용여부는 법인의 임의 사항으로 사업연도별로 임의선택이 가능하다. 둘째, 기업집단 소속법인 중에서 결손이전 대상법인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결손양도법인은 자사결손을 자사소득에서 공제할지 아니면 동일한 기업집단의 다른 소속법인에 결손이전할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넷째, 결손이전대가의 수수는 이전하는 결손액을 한도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나. 결손이전의 대상범위

1) 기업집단의 요건

결손이전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두 법인이 있다고 할 때 만일 두 법인 중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75% 자회사(75 percent subsidiary)에 해당한다면 이 두 법인이 기업집단을 구성하며 각 법인은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된다. 또한 만일 두 법인 모두 제3의 법인의 75% 자회사에 해당한다면 이 세 법인이 기업집단을 구성하며 각 법인은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된다.¹⁰⁶⁾ 여기서 75% 자회사는 다른 법인이 보통주 자본금(ordinary share capital)의 7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이어야 한다.¹⁰⁷⁾ 또한 보통주 자본금(ordinary share capital)은 기업의 모든 발행주식 자본금을 말하되, 고정비율로 배당을 받지만 기업의 이익배분시 참여권이 없는 자본금은 제외한다.¹⁰⁸⁾ 그리고 우선주(preference shares)는 일반적으로는 보통주와 구분되나, 참가적 우선주(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s)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우선주는 조세목적상 보통주로 간주된다. 주식은

106) ICTA1988 s.413(3)(a).

107) ICTA1988 s.838(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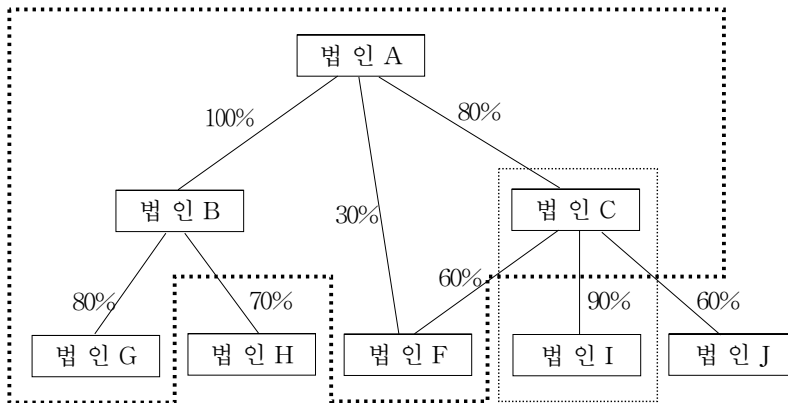
108) ICTA1988 s.832(1).

투자목적으로 보유되어야 하며 매매용 주식(trading stock)은 포함하지 아니한다.¹⁰⁹⁾

기업집단의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림 IV-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른 법인이 보통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법인A의 법인G에 대한 지분은 법인A의 법인B에 대한 지분 100%와 법인B의 법인G에 대한 지분 80%를 곱하여 80%로 계산된다. 같은 방법으로 법인A의 각 법인에 대한 지분을 구하면 법인H에 대한 지분은 70%, 법인I에 대한 지분은 72%, 법인J에 대한 지분은 48%로 계산된다. 그리고 법인A의 법인F에 대한 지분은 법인A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30%와 법인C를 통해 간접 소유하고 있는 지분 48%를 더한 78%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경우 결손이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집단은 두 개이다. 즉, 법인A, B, C, G, F가 중심 기업집단(main group)을 구성하며, 법인C와 I는 하위 기업집단(subgroup)을 구성한다.

보통주식에 대한 지분 이외에도 모회사(parent company)는 자회사에 대해 75% 이상의 경제적 소유권(economic ownership), 즉, 75%

[그림 IV-1] 기업집단의 개념도



109) ICTA1988 s.413(5).

이상의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¹¹⁰⁾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경제적 관계가 없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인위적 기업집단이 결손이전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973년에 도입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될 이익과 자회사의 청산시점에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75% 이상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만, 그 자회사는 75% 자회사로 간주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75% 모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모회사는 자회사의 보통주식 7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② 모회사는 자회사의 75% 이상 배당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 ③ 모회사는 자회사의 회사 청산시에 75% 이상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져야 한다.

2) 기업집단의 거주문제

결손이전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2000년 3월 31일 이전에는 영국 거주기업만으로 한정되었다. 예를 들면, 100% 영국 비거주 자회사 B를 둔 영국기업 A가 그 자회사 B를 통해 또 다른 영국기업 C를 100% 소유하게 될 경우, 두 영국기업(기업 A와 기업 C) 간에 결손이전제도는 적용될 수 없었다. 자회사 B가 영국 비거주기업이므로 국내 지분과 동일하게 인정받지 못하여 영국기업 A는 자회사 B를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또 다른 영국기업 C의 지분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 4월 1일 이후에는 거주요건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1일 이후 결손이전제도는 다음의 두 경우에 적용된다. 첫째, 영국 비거주기업을 통해 다른 영국 거주기업을 소유한 영국 거주기업은 그 다른 영국 거주기업들과 결손이전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110) ICTA1988 s.413(7).

되었다. 둘째, 영국 비거주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두 영국 거주기업 간에도 결손이전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¹¹¹⁾

또한 영국법인이 외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지점의 결손은 원칙적으로 당해 결손이 지점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당해 지점 이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결손이전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 지점의 결손이 그 지점 소재지국에서 기업 집단세제의 적용을 받아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결손이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¹¹²⁾

다.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결손

1)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결손의 유형

(1) 사업결손(trading losses)

사업결손(Schedule D Case I losses)은 자사(自社)의 다음과 같은 이익¹¹³⁾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① 자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다른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¹¹⁴⁾
- ② 자사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¹¹⁵⁾할 수 있다.¹¹⁶⁾
- ③ 자사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계¹¹⁷⁾할 수 있다.¹¹⁸⁾

111) ICTA1988 s.403D.

112) ICTA1988 s.403E.

113) 여기서 이익은 자본이득과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14) ICTA1988 s.393A(1)(a).

115) 동일한 법인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6) ICTA1988 s.393A(1)(b).

117) 동일한 법인에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기간이 무기한이다.

사업결손은 위와 같이 자사의 이익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결손이 전제도를 이용해서 결손양수법인에 다음과 같이 양도될 수도 있다.

④ 사업결손은 결손이전제도에 의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법인의 이익과 상계될 수 있다.¹¹⁹⁾

그러나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과 해외 자산(주식,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결손(Schedule D Case V¹²⁰⁾)에 대해서는 ①, ②, ④가 적용될 수 없다.¹²¹⁾

①, ②, ④ 중 어느 것도 적용될 수 없는 결손은 자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된다. 이월결손금은 오직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수의 주주가 변경되고 그 사업형태가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 후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등 소득상쇄에 큰 제약이 있다.¹²²⁾

(2) 미사용 감가상각비(excess capital allowances)

결손양도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상 감가상각비 중에서 과세 소득금액의 계산상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결손양수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고 전 기로부터 이월된 공제부족액은 양도할 수 없다.¹²³⁾

양도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이다. 예를 들면 만일 임대하고 있는 빌딩의 감가

118) ICTA1988 s.393(1).

119) ICTA1988 s.403ZA.

120) Schedule D Case V는 해외자산소득(overseas property income)과 모든 해외사업소득(whole overseas trade)을 말하며, 각각 Schedule A 및 Schedule D의 Case I 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해외배당 소득(overseas dividend income)은 일반적으로 수령액을 기초로 계산되고 과세된다.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공제(double tax relief)는 해외 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이용될 수 있다.

121) ICTA1988 s.393A(3), s.403ZA(2).

122) ICTA1988 s.768.

123) ICTA1988, s.403ZB.

상각비가 3만파운드이고, 임대료에 따른 임대수익이 2만파운드라고 한다면 결손양수회사로 양도될 수 있는 금액은 3만파운드에서 2만파운드를 차감한 1만파운드가 된다.

(3) 대여관련손실(deficit on non-trading loan relationships)

1996년에 도입된 재정법(Financial Act 1996: FA 1996)에서는 대여 또는 차입으로 인한 모든 손익의 순차액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손익의 범주에는 영업과 관계 없는 대여 또는 차입으로 인한 이자수입과 이자지급뿐만 아니라 할인액과 수수료 및 외환차손익을 포함한다.

영업과 관련 없는 대여 관련 순손익이 양(+)일 경우에는 Schedule D의 Case III으로써 과세된다. 그러나 기업의 대여 관련 순손익이 음(-)일 경우, 즉 영업 목적 이외의 자금조달비용¹²⁴⁾ 등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채무수입¹²⁵⁾을 상회하는 경우, 순손실은 그 기업의 다른 소득과 상계하거나, 결손이전제도에 의해 기업집단의 다른 소속 법인에 양도될 수 있다.¹²⁶⁾

(4) 특정 영업외 순손실(excess charges on income including non-trading charges)

특허권 사용료 및 특정 기부금 등의 영업외 순손익은 영업소득 계산상 손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영업소득에 가감되며 영업외 순손익이 음(-)인 경우 결손이전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¹²⁷⁾

(5) 부동산 투자손실(excess Schedule A losses)

영국에서는 부동산(property)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세청에 의해

124)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비용 등

125) 사업법인의 은행예금이자 등

126) ICTA1988 s.403ZC.

127) ICTA1988 s.403(3).

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1995년 4월 6일 이전에는 투자소득이 Schedule D의 Case VI로 분류되어 과세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Schedule A로 분류되어 과세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소득은 1998년 4월 1일 Schedule A 소득으로 재분류되었다. Schedule A 소득은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만일 Schedule A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손이전의 대상이 된다.

(6) 초과관리비용(excess management expenses of investment companies)

지주회사 등 투자법인(investment company)에 대한 경영비용을 관리비용이라고 한다.¹²⁸⁾ 관리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서 공제(무기한)될 수 있다. 관리비용은 결손이전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과 상계한 후의 차액 부분만이 결손이전의 대상이 된다.¹²⁹⁾

2)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결손의 적용 순서

(1), (2), (3)은 결손양도법인에 있어서 다른 범주의 소득이나 수익이 있더라도 결손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자사의 다른 범주의 소득이나 수익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결손이전의 대상도 될 수 있다. 반면 (4), (5), (6)은 결손양도법인의 다른 범주의 소득이나 수익에서 공제한 후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결손양수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

라.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소득

1)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계산

결손양도법인이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결손을 가지고 있는 경우

128) ICTA1988 s.75.

129) ICTA1988 s.403(3).

이는 결손양수법인의 소득(total profit)과 상계될 수 있다.¹³⁰⁾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 및 그 이외 소득과 자본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구해진다.

$$\begin{aligned}
 & \text{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소득} \\
 = & \text{사업소득} \\
 & - \text{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
 & + \text{그 외 소득과 수익} \\
 & - \text{사업과 관계 없는 금융비용(Schedule D Case III losses)} \\
 & - \text{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사업결손} \\
 & - \text{영업외 손실}
 \end{aligned}$$

2) 결손이전과 다른 결손공제의 적용순서

결손양수법인은 상계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결손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 우선적용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결손의 소급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소득에 대해 결손이전규정을 적용한다.¹³¹⁾

② 특정 영업외 손실(charges on income)과 영업외 금융손실의 공제는 결손이전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¹³²⁾

③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사업결손과 세무상 감가상각공제는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한 후의 소득에 대해 결손이전제도를 적용한다.¹³³⁾

④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결손이전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¹³⁴⁾

130) ICTA1988 s.403.

131) ICTA1988 s.407(1)(a).

132) ICTA1988 s.407(1)(b).

133) ICTA1988 s.407(1)(b).

134) ICTA1988 s.393(1).

다. 기업집단내의 사업연도중 가입과 이탈

기업집단내의 가입이나 기업집단내에서의 이탈에 대한 감독이나 제약은 없다. 기업이 기업집단에 가입하기 전 또는 기업집단에서 이탈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결손이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결손이전은 반드시 두 기업이 같은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인 기간에만 이용가능하다.

사업연도중에 기업집단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업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가입 후 또는 이탈 직전까지의 기간이 적격기간이 된다.¹³⁵⁾ 즉 사업연도 도중에 기업집단에 가입하는 경우는 가입 시점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적격기간으로 취급하며, 사업연도 도중에 기업집단에서 이탈한 때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탈하는 날까지를 적격기간으로 한다.

바.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적격기간 안분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소득이나 결손 중에서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기간(적격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든 특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¹³⁶⁾ 사업결손과 소득은 실무상 기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자본이득은 그 발생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기간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135) ICTA1988 s.403A(9),(10).

136) ICTA1988 s.403B.

사. 결손양도한도액의 계산

결손이전제도하에서 양도가능한 결손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의한다.

① 상계하려는 소득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결손만이 양도 대상이 된다. 즉,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과 장래의 결손은 결손 발생시점과 현 시점에서 양 법인이 기업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② 양도가능 결손액은 보통주식의 지분비율 및 경제적 지분비율과 관계가 없다. 즉, 만일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가 아니더라도 양도가능 결손액은 지분비율 상당액이 아닌 결손의 전액을 양도할 수 있다.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기간의 결손만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양도한도액이 되며,¹³⁷⁾ 실제 양도하는 결손액이 한도액에 미달해도 된다.¹³⁸⁾

- ① 결손양도법인에서 발생한 결손 중 적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결손양수법인이 얻은 소득 중 적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사례]

법인 A는 2003년 1월 1일에 설립된 12월말 결산법인이다. 설립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여 제1기에는 2천파운드, 제2기에는 3천파운드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또한 법인 A는 제2기 말에 영업을 중지하고 폐업하였다.

법인 B는 법인 A의 100% 자회사이면서 2003년 4월 1일에 설립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3월말 결산법인이고 제1기에는 2천파운드, 제2기에는 4천파운드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아직 제3기는 종료되지

137) ICTA1988 s.403A(1).

138) FA1998 sch18.69(1).

않은 상황이다.

결손이전제도는 결손양수법인이 결손양도법인으로부터 결손을 양수하는 제도로 주체는 결손양수법인이기 때문에 적격기간도 결손양수법인(법인 B)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A는 제2기를 끝으로 영업을 중지했기 때문에 2004 사업연도의 적격기간은 2004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 ① 2003 사업연도(적격기간 : 2003년 4월 1일 ~ 2004년 3월 31일)
 - 법인 A의 적격결손액 : $2,000 \times 9/12 + 3,000 \times 3/12 = 2,250$
 - 법인 B의 적격소득액 : 2,000
 - 양도가능한 결손액은 2천파운드가 된다.
- ② 2004 사업연도(적격기간 : 2004년 4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법인 A의 적격결손액 : $3,000 \times 9/12 = 2,250$
 - 법인 B의 적격소득액 : $4,000 \times 9/12 = 3,000$
 - 양도가능한 결손액은 2,250파운드가 된다.

아. 결손이전대가

결손이전대가(a payment for group relief)는 결손양수회사가 결손양도회사로부터 결손을 양수하는 대신 결손양도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결손양도법인에 기업집단 소속법인 이외의 소수주주가 존재하면 해당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결손이전시 조세효과 상당액의 대가 수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소수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집단 소속법인(예: 100% 자회사) 간 결손양도에서도 사업부문 간의 손익관리를 적정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가는 결손이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과세하지 아니한다.¹³⁹⁾ 즉 대가 수수로 인하여 과세되지 않으려면 대가액은 0부터

결손이전액 사이에서 당사자 간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결손이전에 대해 대가를 수수하지 않는 것이 회계목적상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일부의 기업집단은 결손이전대가의 수수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손이전액이 결손양수법인에는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점, 즉 결손양수로 인한 세액감소액만큼 납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손이전에 대한 대가의 수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조세효과 상당액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실제로 조세계획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거래로 결손양수법인의 주식처분 손이 많아진 경우 또는 주식처분익이 적어진 경우에는 세무상 부당한 '가치이전(value shifting)'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처분손이 부인(혹은 처분익의 간주과세)될 위험이 있다.¹⁴⁰⁾

자. 결손이전과 관련한 조세행정

1) 결손이전제도의 적용 신청

결손이전제도의 적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손양수법인이 과세당국에 신청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다.¹⁴¹⁾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업집단 중에서 어떤 법인이 결손이전제도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결손이전제도는 결손양도회사로부터 결손양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이는 결손양도회사가 장래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결손공제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소수주주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으며

139) ICTA1988 s.402(6).

140) TCGA1992 s.30, s.176.

141) ICTA1988 s.402, s.412.

필요할 경우 그 결정에 반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기업에 소수 주주가 없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는 결손이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영국 법인세는 1999년 7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종래의 정부부과방식(Pay & File)에서 신고납세방식(Self-Assessment)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결손이전제도에 관한 신청절차도 바뀌었다.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법인세 신고서양식은 CT600이라 불리는데 결손이전제도에 관한 신청서류 CT600C는 첨부서류로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결손이전제도의 신청주체는 결손양수법인이지만 결손양도법인도 소정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CT600C의 Part1은 결손양수법인이 기입하고, Part2는 결손양도법인이 기입한다.

(1) 결손양수법인의 신청사항

CT600C의 Part1에 결손이전금액과 결손양수법인의 이름 등을 기입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¹⁴²⁾ 신청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다.¹⁴³⁾ 법인세 신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이므로 결손이전제도의 적용신청은 사업연도 종료 후 2년 이내라고 말할 수 있다. 결손이전제도의 적용신청이 반드시 당초 신고에 포함될 필요는 없으며 기한 내라면 일단 결손이전제도의 적용신청을 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한 후 결손이전제도의 적용신청을 하여 당초 신고를 수정할 수 있다.¹⁴⁴⁾

결손을 이전하는 당사자 간에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을 체결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손양도법인으로부터 결손양도동의서를 받아 앞서 언급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¹⁴⁵⁾ 실무상으로는

142) FA1998 sch18 s.68.

143) FA1998 sch18 s.74(1)(a).

144) FA1998 sch18 s.67(2).

결손양도법인의 신청사항으로 기재할 결손양도법인의 CT600C Part2 사본을 받아 제출한다.

(2) 결손양도법인의 신청사항

결손양도회사는 CT600C의 Part2에 양도하는 결손을 결손양수법인이 결손공제에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결손양수법인의 결손이전 적용신청 전까지 결손양도법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¹⁴⁶⁾

(3) 공동약정

복수의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동일 세무서 관할하에 있는 경우 양수도 법인 간에 공동약정을 체결한 후 일괄하여 결손이전제도의 적용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손양도법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편해지는 이점이 있다.¹⁴⁷⁾

2) 결손이전제도와 납부

(1) 세액의 분배

영국은 1999년 4월 이후, 지정된 회사가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집단납부협정(Group Payment Arrangement)으로 알려진 자발적 협정이며, 기업집단과 국세청 간의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협정하에서 납부된 세액은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기업집단 소속법인에 분배된다. 그러나 지정된 회사가 납부를 분배하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국세청은 이 분배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또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들이 환급받

145) FA1998 sch18 s.70(4).

146) FA1998 sch18 s.70(3).

147) FA1998 sch18 s.77, SI 1999/2975.

을 법인세를 다른 소속법인에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규정들이 있다.¹⁴⁸⁾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영국 거주기업과 영국의 지사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법인세 자기납부제도(Corporation Tax Self Assessment)에 의해 징수된다.

(2) 결손이전제도와 예정납부

1999년 7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큰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개시 후 7개월째, 10개월째, 13개월째, 16개월째의 각 월 14일에 당해 사업연도 납부예정액의 4분의 1씩을 예정납부세액으로서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예정액 산정시 결손이전의 조세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예정납부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만 기업집단 전체로 결손이전제도 적용계획을 조기에 수립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에서의 과소납부 처리를 위한 조세환급의 이용

기업집단 내 조세환급의 양도제도는 동일 기업집단 내 한 기업의 세액 과대납부와 다른 기업의 과소납부가 동시에 발생한 기업집단을 위해 도입되었다. 즉 국세청에 의해 부과된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율이 과대납부 세액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다납부에 대한 환급액을 이전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세환급을 이전받은 회사는 조세환급의 이전에 대해 이전한 회사에 보상지급을 할 수 있다. 만일 두 회사가 조세환급의 양도에 합의하였고 그 지급액이 이전된 조세환급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보상지급은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8) FA1989 s.102.

3.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Consortium Relief)¹⁴⁹⁾

가.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의 특징

영국 세법에서는 법적·경제적으로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출자형태의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피출자법인과 공동출자기업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중시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익통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consortium relief)라 하는데, 결손이전제도(group relief)의 법률관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출자자를 과세상 도관으로 취급하는 파트너십 과세와 달리 특정 법인출자자와 피출자법인 간에 각자가 산출한 소득과 결손의 상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나. 컨소시엄 결손이전의 대상범위

1) 컨소시엄의 요건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자집단을 컨소시엄 구성원(member of consortium)이라 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피출자법인을 컨소시엄 자회사(consortium-owned company)라고 한다. 컨소시엄은 특정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법인주주들이 집합적으로 당해 피투자법인의 75% 이상의 보통주식과 경제적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당해 법인주주들로서 구성되는 집단을 말한다.¹⁵⁰⁾ 또한 컨소시엄 자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결손양수법인이 컨소시엄 구성원이고 결손양도법인이 다음과 같은 유형

149) 본질은 松宮信也(2002), Sue Whiting(2004), CCH(2003)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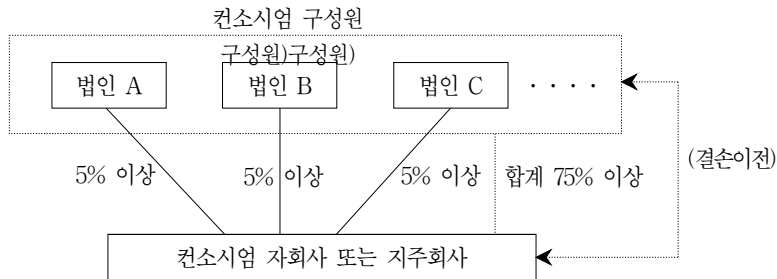
150) ICTA1988 s.413(6).

의 법인일 때에는 컨소시엄 결손이전이 적용될 수 있다.¹⁵¹⁾

- ①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75% 이상을 소유한 지주회사(이하에서는 컨소시엄 지주회사라고 한다)
- ② 컨소시엄 지주회사의 90% 자회사

컨소시엄 구성원이 컨소시엄 자회사에 결손을 양도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나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결손을 이전할 수는 없다. 컨소시엄 구성원이 컨소시엄 자회사의 지분이나 컨소시엄 지주회사의 지분을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¹⁵²⁾

[그림 IV-2] 컨소시엄의 개념도



2)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컨소시엄 자회사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다음과 같은 약정이 존재하면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¹⁵³⁾

- ① 컨소시엄 자회사 또는 컨소시엄 지주회사가 컨소시엄 구성원 또

151) ICTA1988 s.402(3).

152) ICTA1988 s.402(4).

153) ICTA1988 s.410(2).

는 타 법인의 75% 자회사가 되는 약정.¹⁵⁴⁾

② 컨소시엄 자회사 또는 컨소시엄 지주회사 보통주식의 50% 미만 보유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컨소시엄 자회사나 컨소시엄 지주 회사를 지배하는 약정.¹⁵⁵⁾

③ 컨소시엄 지주회사 이외의 자가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공동으 로 컨소시엄 자회사 혹은 컨소시엄 지주회사 의결권의 75%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약정.¹⁵⁶⁾

④ 컨소시엄 자회사의 사업을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타 법인에 양 도하는 약정.¹⁵⁷⁾

3) 200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컨소시엄 범위의 확대

2000년도 세제개정에 따른 결손이전제도 적용범위의 확대는 컨소 시엄 결손이전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컨소시엄의 범위가 범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법인이 소유한 영국 거주기업도 컨소 시엄 결손이전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 양도대상 결손

양도대상 결손의 유형은 결손이전제도와 동일하지만, 사업결손이 생긴 경우 다른 결손공제규정과의 적용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결 손에 결손이전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결손을 결손양도법인의 다 른 범주 소득과 상계할 것인지, 아니면 결손이전을 선택할 것인지 임 의로 정할 수 있다. 반면 컨소시엄 자회사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사 업결손을 양도할 때 이러한 결손은 먼저 다른 범주의 소득과 상계된

154) ICTA1988 s.410(2)(b)(i), s.410(3).

155) ICTA1988 s.410(2)(b)(ii), s.410(3).

156) ICTA1988 s.410(2)(b)(iii), s.410(3).

157) ICTA1988 s.410(3)(b)(iv).

것으로 간주하여 그 잔액만이 양도가능한 금액이 된다.¹⁵⁸⁾ 한편 컨소시엄 구성원이 컨소시엄 자회사에 사업결손을 양도할 때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사례]

만일 컨소시엄 자회사에 200만파운드의 자본이득과 220만파운드의 사업결손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컨소시엄 자회사는 사업결손 220만파운드를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양도할 수는 없고 자본이득 2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20만파운드를 양도할 수 있다. 이는 사업결손을 자사의 다른 소득과 상계하거나 결손양수법인에 모두 양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손이전제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 양도결손액의 계산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에 의해 양도가능한 결손액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적용된다.

① 컨소시엄 자회사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결손을 양도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원이 컨소시엄 자회사에 결손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결손을 이전할 수는 없다.

② 컨소시엄 자회사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결손을 양도하는 경우 각 컨소시엄 구성원의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양도가능 결손 금액에 각 컨소시엄 구성원의 컨소시엄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된다.¹⁵⁹⁾ 다만 이 금액은 해당 컨소시엄 구성원의 소득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지분비율이란 보통주식과 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권의 비율을 말하지만 각각의 비율이 다른 때는 이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¹⁶⁰⁾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의 양도가

158) ICTA1988 s.403 ZA(3).

159) ICTA1988 s.403C(2).

능 결손액을 계산할 때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보유하는 지분비율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사업연도중에 지분비율이 변동하는 때에는 사업연도 기간중의 평균지분비율이 적용된다.¹⁶¹⁾

③ 컨소시엄 구성원이 컨소시엄 자회사에 결손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능액은 컨소시엄 자회사의 소득금액에 각 컨소시엄 구성원의 컨소시엄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된다.¹⁶²⁾ 다만 이 금액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결손금액을 초과하지는 못하며, 지분비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사례]

① 컨소시엄 자회사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결손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 A, B, C, D는 컨소시엄 구성원이며, 컨소시엄 자회사에 대해 각각 40%, 30%, 20%,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컨소시엄 자회사의 자본이득은 200만파운드이고 사업결손은 220만파운드이다. 또한 법인 A의 소득은 30만파운드이다. 컨소시엄 자회사가 법인 A에게 양도가능한 결손액은 다음 ㉠, ㉡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

㉠ 20만파운드(컨소시엄 자회사의 순결손) × 40%(법인 A의 지분)
= 8만파운드

㉡ 30만파운드(법인 A의 소득)

② 컨소시엄 구성원이 컨소시엄 자회사에 결손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 A, B, C, D는 컨소시엄 구성원이며, 컨소시엄 자회사에 대해 각각 40%, 30%, 20%,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법인 A의 자본이득이 150만파운드이고 사업결손은 180만파운드이다. 또한 컨소시엄

160) ICTA1988 s.403C(2)(3).

161) ICTA1988 s.403C(2)(3).

162) ICTA1988 s.403C(3).

자회사의 소득은 100만파운드이다. 법인 A가 컨소시엄 자회사에 양도 가능한 결손액은 다음 ㉠, ㉡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

㉠ 100만파운드(컨소시엄의 소득) × 40%(법인 A의 지분) = 40만 파운드

㉡ 180만파운드(법인 A의 사업결손)

마. 결손이전 대가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의 결손이전대가에 관하여는 결손이전제도에서와 동일하며 당사자 간에 대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같다.

바. 결손이전제도와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의 혼합형태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와 결손이전제도가 모두 적용가능한 경우 그 적용순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로 양수한 결손을 결손이전제도에 의해 양도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결손이전제도에 의해 양수한 결손을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에 의해 양도할 수도 없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기업집단과 컨소시엄의 접점이 될 회사를 도관으로 간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결손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1) 기업집단·컨소시엄 회사(group/consortium company)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컨소시엄 자회사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당 회사를 기업집단·컨소시엄 회사(group/consortium company)라고 한다.¹⁶³⁾ 기업집단·컨소시엄 회사는 결손이전제도와 컨소시엄 결손

163) ICTA1988 s.413(2).

이전제도를 모두 적용할 수 있으나 ICTA상 적용순서에 대한 규정이 있다.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컨소시엄 구성원인 경우에는 해당회사를 연결회사(link company)라고 하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집단·컨소시엄 회사에 대해서는 결손이전제도와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된다.

① 기업집단·컨소시엄 회사에서 발생한 결손은 결손이전규정을 우선 적용(실제로 적용할 필요는 없음)하는 것으로 하고 잔여 결손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¹⁶⁴⁾

② 위의 ①에서 우선 적용한다고 보는 결손이전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집단·컨소시엄 회사에서 발생한 결손에 대해 다른 기업집단 소속법인은 최대한 결손이전의 적용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¹⁶⁵⁾

③ 위의 ①에서 우선 적용한다고 보는 결손이전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집단·컨소시엄 회사의 다른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에 결손이전이 실제로 행해진 경우 당해 이전은 결손양수법인의 소득계산상 고려된다.¹⁶⁶⁾

④ 기업집단·컨소시엄 회사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이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 소득에 대해 컨소시엄 결손이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¹⁶⁷⁾

2) 연결회사(link company)

컨소시엄 구성원이 동시에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인 경우 당해 회사를 연결회사라고 한다.¹⁶⁸⁾ 연결회사에 관한 ICTA상 규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연결회사는 영국법인 또는 영국 내에서 지점 등을 통해 사업하

164) ICTA1988 s.405(1).

165) ICTA1988 s.405(2).

166) ICTA1988 s.405(3).

167) ICTA1988 s.405(4).

168) ICTA1988 s.406(2)(5).

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¹⁶⁹⁾

② 기업집단 소속법인은 컨소시엄 자회사에서 발생한 결손 중 연결 회사의 지분상당액을 한도로 양수할 수 있다.¹⁷⁰⁾

③ 컨소시엄 자회사는 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발생한 결손 중 컨소시엄 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상당액을 한도로 양수할 수 있다.¹⁷¹⁾

사. 신청절차

원칙적으로 결손이전제도와 동일하지만 컨소시엄 결손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에 관련되는 당사법인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자회사와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¹⁷²⁾

4.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

가.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의 특징

영국에서는 기업집단과 관련한 세제로서 결손이전제도와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 이외에도 자본자산에 대한 내부거래손익의 인식을 이연하는 제도가 있다. 자본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손실(capital losses)은 결손이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한 기업집단의 소속법인 간 거래(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인식은 이연된다.

결손이전제도는 법인별로 소득을 확정시킨 후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에 결손과 소득의 상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반면 내부거래손익의

169) ICTA1988 s.406(2)(5).

170) ICTA1988 s.406(2).

171) ICTA1988 s.406(6).

172) FA1998 sch18 s.70(5), Inland Revenue Manual CT2980.

처리는 특정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자산양도시 양도손익의 인식을 이연하는 제도로써 당해 자산이 당해 기업집단의 외부로 매각될 때 인식된다.¹⁷³⁾

나. 자본손익집단의 대상범위

내부거래손익의 처리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당해 내부거래가 당해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기업집단은 결손이전제도에서의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요건과 다르며 여기서는 자본손익집단으로 칭하기로 한다. 이렇게 결손이전대상이 되는 기업집단과 자본손익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당해 규정들이 별도로 입법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로 인하여 기업집단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자본손익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¹⁷⁴⁾

① 주회사(principal company)와 그 75% 자회사 및 해당 자회사의 75% 자회사일 것¹⁷⁵⁾

② 주회사의 직접·간접적 경제적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¹⁷⁶⁾

173) TCGA1992 s.171.

174) TCGA1992 s.170(3).

175) TCGA1992 s.170(3). 이 요건을 75% 요건이라고 한다. 여기서 75% 자회사란 기발행보통주식의 75% 이상을 다른 기업이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이다(ICTA1992 s.170(2)(c), TCGA1988 s.838(1)(b)). 75% 달성여부의 계산은 결손이전제도와 달리 간접보유지분을 직접 지분율로 환산할 필요는 없으며 계층에 제한도 없다. 만일 법인 A가 법인 B의 기발행보통주식 80%를 보유하고 법인 B가 법인 C의 기발행보통주식 80%를 보유하는 경우 법인 A, B, C는 75% 요건을 충족한다.

176) TCGA1992 s.170(3)(b). 이 요건을 51% 요건이라고 한다. 여기서 경제적 지분의 50% 초과란 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권의 50% 초과를 의미한다(TCGA1992 s.170(7)). 이 판정시 결손이전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검

다른 법인의 75% 자회사는 주회사가 될 수 없다.¹⁷⁷⁾ 또한 동시에 둘 이상의 자본손익집단에 소속될 수 없다. 만일 둘 이상의 자본손익집단에 소속될 수 있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되는 경우 더 큰 지분관계로 연결된 집단에 소속된 것으로 하되 지분의 비교는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소속될 자본손익집단을 결정한다.¹⁷⁸⁾

- ① 간접지분을 무시하고 직접지분으로 비교
- ② 배당청구권에 대한 지분으로 비교
- ③ 잔여재산분배권에 대한 지분으로 비교
- ④ 기발행보통주식에 대한 지분으로 비교

하나의 자본손익집단은 소속법인이 변경되어도 주회사가 동일한 한 동일한 자본손익집단으로 간주된다. 또한 한 자본손익집단의 주회사가 다른 자본손익집단의 소속법인이 된 경우 당해 자본손익집단과 다른 자본손익집단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¹⁷⁹⁾

2000년 3월 31일 이전 외국법인은 자본손익집단의 소속법인(주회사는 영국법인이어야 함)이 될 수 있었으나 외국법인 간이나 외국법인과 영국법인 간에는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0년 4월 1일 이후에는 외국법인이라도 양도대상자산이 영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한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을 적용하게 되었다.¹⁸⁰⁾

증과 자산검증을 통과해야 하나 일부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즉, 특정약정으로 장래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 결손이전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각각의 지분으로 간주하지만, 옵션 약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TCGA1992 s.170(8)).

177) TCGA1992 s.170(4).

178) TCGA1992 s.170(6).

179) TCGA1992 s.170(10).

180) TCGA1992 s.171(1A).

다.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의 개요

1) 자본손실

자본손익에 관한 계산규칙은 TCGA에 규정되어 있다. ICTA상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처분 등 다른 세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자본이득에 해당한다.¹⁸¹⁾ 영업행위와 비교할 때 자본자산의 처분은 그 거래시기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법인이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에 따라 세법은 사업결손과 비교하여 자본손실의 손금화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세법상 자본손실의 공제(relief)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

- ① 자본손실은 결손이전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자본손실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자본이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소급공제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될 수 없다.
- ③ 50% 초과 지배관계를 갖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은 오직 당해 사업연도 이후 동일한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¹⁸²⁾
- ④ 사업결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양도와 더불어 다른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본손실은 다른 법인에 승계될 수 없다.¹⁸³⁾

2) 내부거래손익의 처리방법

자본손익집단 소속법인 간에 자산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이 자본손익집단의 외부로 매각되는 시점까지 양도손익의 인식이 이연된

181) TCGA1992 s.15(2), s.37(1).

182) TCGA1992 s.18(3).

183) ICTA1988 s.343.

다.¹⁸⁴⁾ 즉, 내부거래시 실제 수수하는 대가액에 관계 없이 양도 직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원시취득시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물가조정액(index allowance)을 가산한 금액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¹⁸⁵⁾ 이 규정은 내부거래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에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는 없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상 혜택은 아니나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손익집단 소속법인 간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의 남용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있다.

(1) 이탈가산세(exit charge)

자본손익집단 소속법인 간에 자산을 이전한 후 6년 내에 당해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자본손익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이탈법인은 당해 내부거래시 당해 자산을 일단 외부에 시가로 매각한 후 다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한다.¹⁸⁶⁾ 이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자본이득세를 이탈가산세(exit charge)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자본손익집단 가입 전 자본손실의 사용제한(pre-entry losses rule)

개별 기업의 자본손실은 이월되어 장래의 자본이득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TCGA에서는 남용방지를 위해 자본손익집단 가입 전에 실현된 자본손실과 자본손익집단 가입 전 보유자산에서 발생한 미실현평

184) TCGA1992 s.171.

185) TCGA1992 s.56(2).

186) TCGA1992 s.179.

가손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¹⁸⁷⁾

(3) 가치이전(value shifting)

내부거래손익의 처리규정은 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대가액과 관계 없이 적용되지만 자본손익집단 소속법인 간에 자의적으로 정한 가액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무제한 인정하면 용이하게 조세회피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회사를 청산하면서 다른 자회사에 시가 이하로 사업을 인수시키면 결과적으로 모회사에서 처분손실을 크게 계상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처분손실을 부인하는 일련의 조세회피규정을 두고 있다.

라. 이탈가산세

1) 취지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의 적용을 무제한 인정하면 조세회피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조세회피를 위한 대표적인 예는 미실현평가익을 보유하는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연되었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대신 당해 자산을 일단 신설자회사(기업집단 소속법인)에게 매각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신설자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¹⁸⁸⁾ 이탈가산세는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기본규정

자본손익집단 소속법인 간에 자산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6년 내에 당해 내부거래로 자산을 취득한 소속법인이 당해 자본손익집단을 이탈하고, 이탈시점에서 당해 이탈법인이나 그 이탈법인과 함께 집단을

187) TCGA1992 s.177A, sch7A.

188) 이 형태를 일반적으로 ‘하이브다운(Hive-down)’이라 함.

이탈한 다른 소속법인이 당해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이탈법인은 내부거래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직후에 그 당시 시가로 당해 자산을 매각하였다가 이를 다시 구입한 것으로 본다.¹⁸⁹⁾ 이렇게 매각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탈법인에 자본이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를 이탈가산세 또는 규정의 조문번호를 따서 제179조 가산세(section 179 charge)라고 한다. 또한 자본손익집단에서 이탈하는 때의 시가가 내부거래 당시의 시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탈법인에서 자본손실이 인식된다. 이탈가산세는 이탈법인에 부과되지만 이탈법인이 납세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다른 구성원 법인이나 이사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¹⁹⁰⁾

3) 예외규정

(1) 청산시 예외적 취급

자본손익집단 소속법인은 다른 소속법인이 청산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해당 집단을 이탈하였다고 간주되지 않는다.¹⁹¹⁾ 한편 모회사가 청산되어 관재인이 그 주주에게 자회사주식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는 분배된 시점에 당해 집단을 이탈하게 되어 이탈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정 회사분할 절차중에 이루어지는 분배에 대해서는 이탈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¹⁹²⁾

(2) 적격관계를 유지하는 복수 소속법인의 이탈

자본손익집단의 둘 이상의 소속법인이 특정 관계를 유지한 채 동시에 자본손익집단을 이탈하는 경우 당해 집단을 이탈하기 전 당해 이탈법인 간에 거래한 자산은 이탈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189) TCGA1992 s.179(1),(3).

190) TCGA1992 s.190.

191) TCGA1992 s.1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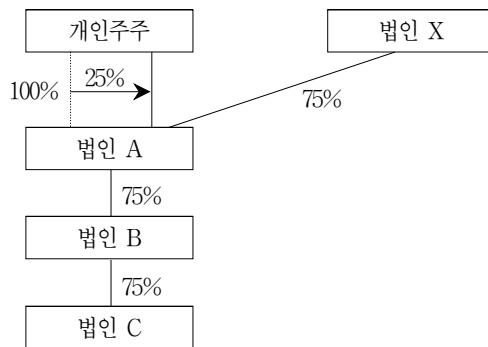
192) TCGA1992 s.192(3).

다.¹⁹³⁾ 특정 관계란 이탈법인 간에 별도의 자본손익집단을 구성하는 관계를 말한다.¹⁹⁴⁾

(3) 소속집단의 변경

한 자본손익집단의 주회사가 다른 자본손익집단의 소속법인이 된 경우 두 집단은 동일한 자본손익집단으로 간주된다.¹⁹⁵⁾ [그림 IV-3]에서 개인주주가 100% 지배하는 법인 A는 법인 B, C를 소속법인으로 하는 자본손익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X가 개인주주로부터 법인 A의 75% 지배권을 양수하면 구 집단(법인 A 집단)과 신 집단(법인 X 집단)은 동일한 자본손익집단으로 간주된다.¹⁹⁶⁾ 따라서 법인 C는 자본손익집단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본다.¹⁹⁷⁾

[그림 IV-3] 소속집단의 변경



다만 법인 C가 내부거래 후 6년 내에 법인 X와 75% 요건 및 51%

193) TCGA1992 s.179(2).
 194) TCGA1992 s.179(10)(a).
 195) TCGA1992 s.170(10).
 196) TCGA1992 s.171.
 197) TCGA1992 s.179(5),(6).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게 되면 그 시점에서 법인 C는 집단이탈로 간주된다.¹⁹⁸⁾ 즉 위 예에서 법인 B가 법인 C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업에 매각할 때 법인 C는 집단을 이탈한 것으로 되어 이탈가산세가 부과된다.

마. 집단가입 전 자본손익의 사용제한

1) 취지

영국에서 결손발생회사를 절세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 만일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기업집단에 가입시켜도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그 회사에 이관하여 과세상 피난처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자본손실은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을 활용하여 미실현평가손을 집단 간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전시킬 수 있지만 자본손익집단의 외부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제한된다.¹⁹⁹⁾ 즉 자본손익집단 가입 전에 발생한 자본손실은 그 법인의 가입 전 보유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 등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

집단가입 전 자본손실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집단가입 전에 발생한 자본손실을 규제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자본손실을 가진 집단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회사를 가입시킨 경우에 당해 손실과 이득을 상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 점을 이용한 계획을 배제하기 위해 1998년에 집단가입 전 자본손실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집단가입 전에 발생한 자본이득도 당해 법인이 집단가입 전부터 보유하는 이월자본손실 등 특정 자본손실과만 상계할 수 있게 하였다.²⁰⁰⁾

198) TCGA1992 s.179(6),(7).

199) TCGA1992 s.177A, sch7A, 일반적으로 'Pre-Entry Loss Rule'.

200) TCGA1992 s.177B, sch7AA, 일반적으로 'Pre-Entry Gain Rule'.

2) 집단가입 전 자본손실

규제대상이 되는 집단가입 전 자본손실이라 함은 다음의 자본손실을 말한다.²⁰¹⁾

- ① 자본손익집단에 가입하기 전에 실현된 자본손실
- ② 자본손익집단에 가입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자본손실 중 가입 전 기간에 대한 부분

3) 가입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

가입 전 보유자산은 자본손익집단에 새로 가입하는 법인이 가입 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을 말하나 자본손익집단의 외부로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은 당해 신규가입법인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²⁰²⁾ 이는 집단가입 후 내부거래손익 처리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집단 내 다른 소속법인에 당해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자본손익집단의 외부로 자산이 매각된 후 다시 자본손익집단 소속법인에 의해 구입된 자산은 가입 전 보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²⁰³⁾

4) 가입 전 보유자산의 자본손실 계산방법

가입 전 보유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자본손실 중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그 전액이 아니라 가입 전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러한 대응부분의 계산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① 가입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시가법)
- ② 처분손실을 기간안분하는 방법(기간안분법)

201) TCGA1992 sch7A para.1(2).

202) TCGA1992 sch7A para.1(3).

203) TCGA1992 sch7A para.1(4).

5) 상계대상 자본이득

가입 전 자본손실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자본이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²⁰⁴⁾

- ① 신규가입법인이 자본손익집단에 가입하기 전에 실현된 자본이득
- ② 신규가입법인이 자본손익집단에 가입하기 전부터 보유하는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 ③ 신규가입법인이 자본손익집단에 가입한 후 당해 집단의 외부에서 취득한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6) 집단가입 전 자본이득의 사용제한

집단가입 전 자본손실은 집단가입시 실현된 자본손실뿐만 아니라 가입시 보유자산에 대한 미실현평가손까지 규제대상이 된다. 한편 집단가입 전 자본이득은 가입시 실현된 이득만 규제대상이 되고, 집단가입 후 가입 전 자산처분에 대한 이득(즉 미실현평가익)은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손실이 있는 소속법인이 미실현평가익을 가진 법인을 집단에 가입시킨 후 당해 이득을 실현시켜 자본손실과 상계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204) TCGA1992 sch7A para.7.

V. 미국과 영국의 기업집단세제 비교

1. 연결납세와 개별납세

미국은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고 영국은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들 국가의 제도와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Ⅲ장에서 살펴본 미국의 기업집단세제와 제Ⅳ장에서 살펴본 영국의 기업집단세제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정리·분석하기로 한다.

미국의 기업집단세제는 연결납세제도로써 기업집단을 하나의 개별기업인 것처럼 보아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기업집단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하여 영국의 기업집단세제는 결손이전제도로써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개별기업 간의 결손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집단에 대하여 미국이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영국은 기본적으로 개별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양국의 기업집단세제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생한다.

가. 제도의 복잡성

미국형의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개별납세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과세소득 산정체계 및 세액계산구조와 납세의무의 이행 등에 관한 일관된 별도의 세법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연결기준에 따라 공제액 및 한

도 등을 재계산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법이 복잡하고 방대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영국형의 결손이전제도하에서는 개별납세제도에 결손이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법이 복잡해지지 아니한다. 물론 영국의 기업집단세제가 제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지만 이는 컨소시엄 결손이전이라는 영국 고유의 제도 때문에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나. 연대납세의무

연결납세제도와 결손이전 개별납세제도는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연대납세의무 여부에도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미국에서는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회사가 연결세액의 납세주체가 되며 이에 대하여 개별회사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²⁰⁵⁾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영국의 경우에는 개별납세제도이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영국의 기업집단세제하에서 납세주체는 이익이 발생하는 개별회사가 되며 각 개별회사는 기업집단의 다른 개별회사의 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의 총발행주식 중 90%를 소유하고 있고 A사와 B사 중 한 기업은 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기업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결손이 발생한 기업도 소득이 발생한 기업과 연대하여 연결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데 비하여 영국의 결손이전제도하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기업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05)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와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기간 동안 구성법인이었던 자회사는 연결세액을 연대하여 연결납세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Reg. section 1.1502-6(a)).

다.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위험

미국의 연결기업집단에 속하는 종속회사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는 두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첫째의 위험은 당해 종속회사의 결손이 다른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소득과 상계되는 경우 동 회사가 미래에 발생할 소득에서 상계될 조세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적정하게 받지 못한다면 소수주주의 지분이 감소되거나 채권자의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감소하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둘째의 위험은 연결기업집단의 연결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당해 종속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적절한 분배액보다 큰 세액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소수주주나 채권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영국의 경우 전자의 위험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존재하지만²⁰⁶⁾ 후자의 위험은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소득통산과 누진효과

미국의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기업집단 소속법인들의 소득이 통산되어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한 다음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연결세액을 산정하는 데 비하여 영국의 결손이전제도하에서는 결손의 대체만이 있을 뿐 소득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누진세율의 구조하에서 미국의 경우 소득통산으로 인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영국의 경우 소득통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이전제도로 인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영국의 경우 결손이전제도와는 별개로 관계회사집단²⁰⁷⁾에

206) 미국과 영국 모두 조세혜택의 이용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세제가 개입하지 아니하며 기본적으로 기업집단에 맡겨져 있다.

207) 관계회사집단의 범위는 결손이전의 적용범위와 다르다. 즉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한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지배

대하여 각 개별회사별로 세율을 적용할 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상한과 하한 금액을 관계회사의 숫자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득통산과 유사한 효과를 갖도록 하고 있다. 즉 특정 회사가 하나 이상의 다른 회사와 관계회사에 해당한다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상한과 하한 금액을 관계회사의 수에 따라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다.²⁰⁸⁾

예를 들어 A사가 B사와 C사를 지배함으로써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게 된 경우 소득이 £600,000인 A사가 법인세신고를 하는 경우 세율의 적용방법을 관계회사집단이 아닌 경우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2004회계연도의 경우 영국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 소득 £300,000 이하 : 19%로 하되, 소규모법인에 대한 경감 적용
- 소득 £300,000 초과 £1,500,000 이하 : 30%로 하되, 소규모법인에 대한 경감 적용
- 소득 £1,500,000 초과 : 30%

만약 위에서의 A사가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세액계산에 있어서 19%의 세율과 소규모법인에 대한 경감이 적용된다. 그러나 A사가 관계회사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세율적용의 하한금액인 £300,000은 $£10,000 (= £30,000 \div 3)$ 이 되고 상한금액인 £1,500,000은 $£500,000 (= £1,500,000 \div 3)$ 이 되므로 A사의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30%가 적용되고 소규모법인에 대한 경감은 적용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영국에서의 관계회사집단에 대한 세율적용특례는 미국에서의 연결납세제도에 의한 소득통산과 누진세율 적용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영국에서의 세율적용특례는 결손이전의 선택과는 관계 없이 강제로 적용하는 것인 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연결납세를 기업이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통산에 의한 누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관계회사집단이 구성된다(ICTA(1988) section 416).

208) ICTA(1988) section 13(3)(b) & section 13AA(4)(b).

서 차이가 있다.

<표 V-1>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에 따른 차이점

구 분	미 국	영 국
납세방법	연결납세	결혼이전 후 개별납세
제도의 복잡성	개별납세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과세 소득 산정체계 및 세액계산구조와 납세의무의 이행 등에 관한 일관된 별도의 세법규정 존재	개별납세제도에 결혼이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형식
연대납세의무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 연대납세의무 있음	연대납세의무 없음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위험	① 결혼회사가 결혼통산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여 소수주주나 채권자가 입을 손해의 가능성 ②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당해 종속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적정한 분배액 보다 큰 세액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소수주주나 채권자가 입을 손해의 가능성	결혼회사가 결혼이전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여 소수주주나 채권자가 입을 손해의 가능성만 있음
소득통산 및 누진효과	소득통산으로 인한 누진효과 있음	소득통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는 없으나 관계회사집단에 대하여 누진세율 적용의 하한 및 상한금액을 감소하도록 하는 규정 있음

2. 기업집단세제의 강제적용 여부

미국과 영국 모두 기업집단세제의 적용은 기업의 선택에 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즉 미국의 경우 관계회사집단은 법인세에 관하여 법인들이 개별적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대신 연결납세를 할 수 있는 특권(privilege)을 가진다.²⁰⁹⁾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당연하게 연결납세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과 같이 계속 개별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도 결손이전제도는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²¹⁰⁾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결손이전제도와는 관계 없이 기업집단 간의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이연규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²¹¹⁾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신고를 한 관계회사집단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계속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즉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²¹²⁾ 이러한 계속적용의 요건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회사 중 일부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연도에만 연결납세신고를 하고 모든 구성회사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등 자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영국에서는 사업연도별로 결손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결손이전을 허용하기 때문에 한 번 결손이전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에 계속하여 그 적용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의 결손이전제도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감안한 과세제도라기보다는 기업집단에 대한 조세지원으로서의 성격이 더 큰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209) IRC section 1501.

210) FA(1998) para 74 Sch 18.

211) TCGA(1992) section 56(2).

212) Reg. section 1.1502-75(a)(2).

<표 V-2> 기업집단세제의 강제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점

구 분	미 국	영 국
최초 적용	기업집단의 선택에 따름	기업집단의 선택에 따름, 단,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규정은 적용강제
계속 적용	강제됨. 단,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제외	

3. 조세혜택의 통산 또는 이전

기업집단세제는 개별기업의 조세혜택이 다른 개별기업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 이 경우 조세혜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① 공제가능한 결손
- ② 한도에 의하여 규제되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 ③ 한도에 의하여 규제되는 감면 및 손금: 기부금, 지급이자 등

또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조세혜택이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전 연도로 소급하여 사용되거나 그 이후 연도로 이월되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연결납세집단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보고 과세소득 및 세액을 산정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개별회사의 모든 조세혜택이 다른 개별회사의 소득 또는 세액에서 차감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납세제한연도(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SRLY), 역취득, 내포손실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당해 개별회사가 개별납세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전 연도와 이후 연도에도 사용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영국의 결손이전제도하에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을 다른 개별회사의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일 뿐 다른 조세혜택의 사용이나 다른 사업연도로의 소급 또는 이월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이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결손은 결손이 발생한 당해 법인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영국의 결손이전 제도는 조세혜택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비하여 기업집단에 조세혜택 사용의 선택여지를 허용하는 측면이 있다. 즉 결손이전에 있어서 결손이 발생한 개별회사의 모든 결손을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이전할 결손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결손을 어느 개별회사에 이전할 것인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율적용특례나 누진세율 적용에 있어서 가장 유리하도록 결손이전의 금액이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보다 유연한 기업집단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표 V-3> 조세혜택의 통산 또는 이전상 차이점

구 분	미 국	영 국
통산 또는 이전대상 조세혜택	① 결손금 공제 ② 투자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③ 기부금공제	결손금 공제만 가능함
소급 및 이월공제	가능함. 단,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있음	불가능함
조세혜택의 부분이전 또는 통산	불가능함	가능함

4. 내부거래

미국의 연결납세제도하에서 내부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는 당해 거래 직후를 기준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 거래를 말한다.²¹³⁾ 연결납세제도가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기업들의 집단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간의 내부거래가 연결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연결납세규칙에서의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의 목적은 당해 내부거래로 인하여 연결과세소득 또는 연결세액이 증감되거나 손익의 귀속시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²¹⁴⁾ 이에 따라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을 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인식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판매 등으로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 이연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연결납세규칙에서는 내부거래의 유형별 손익이연여부, 내부손익과 대응손익(corresponding items)의 개념 및 대등원칙(matching rule)과 촉진원칙(acceleration rule) 등 복잡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영국의 제도는 단순한 결손이전제도가기 때문에 내부거래손익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본손익집단에 대한 자본이득세제도(group capital gains tax rule)를 별도로 두어 자본손익집단²¹⁵⁾에 속하는 개별회사 간에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213) Reg. section 1.1502-13(b)(1)(i).

214) Reg. section 1.1502-13(a)(1).

215) 기업집단 자본이득세제도에서의 기업집단은 결손이전에서의 기업집단과 그 범위가 다르다. 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최소한 75%를 소유하여야 하는 점은 같지만 자본이득세를 위한 기업집단의 경우 간접소유관계에 있다면 주기업(principal company)이 당해 기업의 총발행주식 중 51%를 초과하여 소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를 75% 소유하고 B사가 C사를 75% 소유하며 C사는 D사를 75% 소유한 경우 결손이전제도에서는 A, B, C 및 D사 모두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지만, 자본이득세를 위한 기업집단의 경우 D사는 주기업인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처분손익을 당해 자산이 당해 집단 외부로 판매될 때까지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²¹⁶⁾ 따라서 미국의 연결납세 제도와는 달리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이연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개별회사가 기업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이탈하는 시점에 이연된 내부거래손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도록²¹⁷⁾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영국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이후 6년 이내에 자본손익집단에서 이탈할 경우 내부거래손익은 당해 기업의 집단이탈 사업연도 초와 집단 내 양도시점 중 늦은 날에 그 자산을 매각한 후 곧바로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²¹⁸⁾

<표 V-4> 내부거래손익의 처리상 차이점

구 분	미 국	영 국
내부거래손익의 처리에 관한 규정	연결납세규칙에 존재	자본손익집단에 대한 자본이득세 규정에 존재
내부거래손익의 이연대상	① 모든 자산의 양도 ② 용역제공 ③ 임대 또는 대여 등 ④ 주주에 대한 분배	자본손익(capital gain or losses)이 발생하는 자산이전
연결이탈시 처리	이탈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보아 손익인식	6년 내 이탈한 경우에만 자산매각 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함

A사의 간접소유비율이 42.1875%에 불과하게 되어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216) TCGA(1992) section 171.

217) Reg. section 1.1502-13(d).

218) TCGA(1992) section 179.

5. 투자수정과 잉여금수정

가. 투자수정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투자수정(investment adjustment)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P)이 자회사(S)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S의 배당 및 손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수정의 목적은 연결과세소득이 연결납세집단의 소득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P와 S를 하나의 실체로 보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P가 100달러를 출자하여 S를 설립하였고 S가 10달러의 소득을 얻은 경우 P의 기초가액²¹⁹⁾ 100달러는 연결납세규칙에서의 투자수정규정에 따라 10달러 증가하는데, 이는 S의 소득에 대하여 한 번 과세하고 P가 S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이익에 대하여 한 번 더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S의 감면소득(tax-exempt income) 및 비자본 공제불능경비(noncapital, nondeductible expenses)에 대하여도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가액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²²⁰⁾ 한편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P의 기초가액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S의 결손에 대하여 한 번 공제되고 P가 S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이익 계산시 한 번 더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영국의 결손이전제도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별개의 실체로 보아 개별납세를 하는 것이므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투자수정을 하지 아니한다.

219) IRC section 358(배당받은 자의 주식기초가액의 결정)에 의한 기초가액을 말한다.

220) Reg. section 1.1502-32(a)(1).

나. 잉여금수정

미국 세법상 E&P(Earnings and Profits)라 함은 세무상 잉여금을 말하며 과세소득을 기초로 계산되는 당기배당가능소득이다. 법인이 E&P의 범위 내에서 분배한 금액이 배당(dividend)이 되고,²²¹⁾ 법인 주주에 관해서는 총소득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수입배당공제)가 적용된다.²²²⁾ 이에 반하여 법인의 E&P를 초과하는 분배는 배당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아니하고, 분배를 받는 주주의 주식의 기초가액에서 공제되어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때의 주식양도이익을 증가시키게 된다.²²³⁾ E&P에 대하여는 IRC section 312(E&P에 대한 효과)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납세 규칙에서 E&P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상위의 구성 법인의 E&P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위의 구성법인의 E&P를 반영하고 공통의 모회사에서 연결납세집단의 E&P를 산정함으로써 P와 S를 하나의 실체로 보려는 것이다.²²⁴⁾

영국의 기업집단세제에서는 미국에서와는 달리 세무상 잉여금의 수정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표 V-5> 투자수정 및 잉여금수정 여부

구 분	미 국	영 국
투자수정	자회사의 배당 및 손익에 대하여 적용	규정 없음
잉여금수정	연결잉여금 산정을 위하여 수정하도록 함	규정 없음

221) IRC section 316(a).
 222) IRC section 61(a)(7) & 243.
 223) IRC section 301(c).
 224) Reg. section 1.1502-33(a)(1).

6. 조세회피방지규정

가. 미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

연결납세의 선택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다양한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결납세집단 범위의 자의적 조정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

미국의 연결납세제도하에서 주식소유비율이 80% 이상이 되면 연결납세집단에 포함되고 80% 미만이 되면 연결납세집단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80% 이상 소유기준”에 관한 규정을 남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이를 위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IRC에서 재무부에 위임한 규칙제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하고 있다. 이 열거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²²⁵⁾

① 주식인수보증권(stock warrants), 전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전환증권을 주식으로 보거나 특정 주식을 주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

② 주식매매옵션(options to acquire or sell stock)을 행사된 것으로 보는 규정

③ 주식시가의 80% 이상 보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집단이 주식의 시가를 선의(good-faith)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신뢰하도록 하는 규정

④ 주식시가의 80% 이상 보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종류간의 상대적 시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당해 기준을 충

225) IRC section 1504(a)(5).

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하는 규정

⑤ 특정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성법인 간의 주식이전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⑥ 의결권의 변동이 주식시가의 상대적인 변동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의결권의 변동을 무시하도록 하는 규정

2) 개별납세제한연도

개별납세제한연도(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SRLY)라 함은 구성법인(a member) 또는 구성법인에 자산을 양도 또는 분배한 법인(a predecessor of a member)²²⁶⁾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를 말한다.²²⁷⁾ SRLY제도는 결손금의 공제 또는 이월세액공제의 적용 등을 목적으로 결손기업을 취득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SRLY는 그 핵심이 되는 규정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내포손실공제제한, 모회사의 지분변동에 따른 규제, 역취득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3) 역취득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규모가 작은 관계회사집단(또는 법인)이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또는 법인)을 취득

226)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구성법인에 자산을 양도 또는 분배한 법인을 말한다(Reg. section 1.1502-1(f)(4)).

- ① 청산에 따른 분배, 피합병, 주식과 자산의 교환 등을 통하여 이월결손금 등이 자산을 양수한 법인에 승계(IRC section 381(a))되는 경우
- ② 자산을 양수 또는 분배받는 법인의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양도 또는 분배하는 법인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자산의 기초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 한함)

227) Reg. section 1.1501-1(f)(1).

하지만, 거래 후에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의 주주가 규모가 작은 관계회사집단을 지배하는 지분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이 규모가 작은 관계회사집단을 취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²²⁸⁾

역취득은 SRLY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역취득 직전에 제1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소멸하고 역취득 직전에 제2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이 역취득일 이후에는 제1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여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P와 S가 P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여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P가 T(T와 U로 구성된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에 흡수합병되고 합병 직전에 P의 주주가 합병 직후 T의 주식시가의 90%를 소유하게 된 경우 P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T와 U를 새로운 구성법인으로 추가하고 T를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로 하여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²²⁹⁾

역취득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집단이 종전에 연결납세를 해왔다면 계속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4) 내포손실

내포손실(built-in loss)이라 함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보유하던 자산의 장부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보다 큰 차액을 말하며 연결납세를 선택한 후 당해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실현손실은 연결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데 제한을 가하고 있다.²³⁰⁾

228) Reg. section 1.1502-75(d)(3)(i).

229) Reg. section 1.1502-75(d)(3)(i).

230) Reg. section 1.1501-15.

5) 초과손실계정

자회사의 결손누적에 대하여 투자수정을 한 결과 자회사 주식에 대한 모회사의 기초가액이 0 이하로 되더라도 유한책임으로 인하여 주식의 기초가액을 0 이하로 계상할 수는 없다. 이렇게 0 이하로 수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으로 관리하였다가 당해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6)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부인 및 당해 자회사손실의 공제제한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처분 사업연도의 자회사의 손실은 연결과세소득에서의 공제가 제한된다.

7) 유형별 조세회피방지 포괄규정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보완적으로 유형별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즉 주식처분손실의 부인, 내부거래손익, 기초가액수정, 초과손실계정, E&P, 지분변동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정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영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

1) 기업집단 범위의 자의적 조정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

영국의 결손이전제도에 있어서 주식소유비율이 75% 이상이 되면 기업집단에 포함되고 75% 미만이면 제외된다. 이러한 “75% 이상 소유기준”에 관한 규정을 남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²³¹⁾

① 주식의 보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익검증과 자산검증(profit

231) ICTA(1988) Sch. 18.

test & asset test)

- ② 주식매매옵션(option arrangement)을 행사된 것으로 보는 규정
- ③ 보통주식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경제적 지분, 즉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에 대하여도 75%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²³²⁾
- ④ 특정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적격 기업집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 이 경우 특정 약정이라 함은 환매조건부 주식양도약정이나 주식소유상황과 다른 기업지배관련 약정 등을 말한다.²³³⁾

2) 자산양도손익의 이연과 관련한 조세회피방지규정

영국의 기업집단세제에서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 양도손익에 대한 이연규정을 남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당해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6년 내 기업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동 자산을 시가로 처분함과 동시에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본이득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²³⁴⁾
- ② 기업집단에 소속되기 전에 존재하던 개별회사의 내포손익(pre-entry losses and gains)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본손익과 상계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²³⁵⁾
- ③ 기업집단 간 자산양도를 통하여 가치가 감소한 개별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인위적인 자본손실을 계상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규정²³⁶⁾

232) ICTA(1988) section 413(7).

233) ICTA(1988) section 410(1).

234) ICTA(1988) section 179(3).

235) ICTA(1988) section 177A & 177B.

236) ICTA(1988) section 176.

<표 V-6> 미국과 영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

구 분	미 국	영 국
기업집단 범위의 자의적 조정규제	옵션행사간주	옵션행사간주, 수익검증과 자산 검증 등
개별납세제한연도 및 역취득에 의한 규제	규정 있음	규정 없음
초과손실계정	규정 있음	규정 없음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부인 및 당해 자회사손실의 공제제한	규정 있음	유사한 규정 있음
내포손익규제	규정 있음	규정 있음

VI. 우리나라 기업집단세제에의 시사점

제V장에서 살펴본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와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비교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여지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연결납세형과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는 논리의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과세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 어느 편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어느 편이 옳은 방법인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다 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1. 경제적 실체개념과 법적 실체개념

기업집단세제는 법인세의 납세단위인 기업실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이를 납세단위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집단에 소속된 개별기업은 기업집단이라는 경제적 실체의 사업부 또는 지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기업집단이 하나의 납세단위이기 때문에 개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제거되어야 하고 세율의 적용, 결손의 공제와 이월 및 소급, 세액공제, 감면, 손금산입 등의 한도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통산하게 된다. 이러한 세무상의 조치들은 기업집단을 하나의 납세단위로 보는 단일실체개념(single entity concept)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다. 즉 당초부터 기업집단을 여러 개의 개별기업으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기업으로 사

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동일한 조세효과를 갖게 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개별납세를 할 때보다 조세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연결납세로 인한 조세부담의 변동을 조세혜택 또는 과세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연결납세와 개별납세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연결납세를 선택하게 되지만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한 후에는 계속 연결납세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 연결납세가 불리하게 되더라도 이를 중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연결납세가 반드시 조세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비하여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서는 납세단위를 개별기업으로 하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기업 간에 결손 등의 조세 특성을 이전시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 형식상의 실체인 개별법인을 납세단위로 본다면 개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제거되어서는 안 되고 세율의 적용, 결손의 공제와 이월 및 소급, 세액공제, 감면, 손금산입 등의 한도는 개별기업별로 산정되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서 개별기업의 결손 등 조세혜택을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기업에 이전시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인 조치로서 조세혜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결손이전제도에서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결손이전은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이전제도의 적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으며 조세지원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법인에 조세지원을 하는 명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즉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기업집단세제를 통하여 개별납세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세

제를 도입하지 아니할 경우 자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법인세의 납세단위를 법적 실체관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는 기업집단 소속법인들을 당초부터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업집단에 특례조치를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합병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합병 후 합병법인에 승계될 수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한 방안으로서의 합병에 대한 조세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집단에 대하여도 기업의 양도 또는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세지원책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기업집단세제를 조세지원책으로 파악한다면 반드시 결손이전만을 기업집단세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에서처럼 미실현이익의 제거 또는 각종 한도의 통산 등을 기업집단세제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실현이익의 제거나 각종 한도 등의 통산은 항상 기업집단에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²³⁷⁾ 조세지원책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없거나 적을 뿐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을 경제적 실체개념에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실체개념에서 파악할 것인지는 정책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기업을 경제적 실체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경제논리에 충실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으나 경제적 실체개념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체의 판단, 즉 연결납세의 범위 등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과 다른 구분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제적 실

237) 미실현이익의 제거는 기업집단에 세무상 유리하지만 미실현손실의 제거는 불리하며 각종 한도의 통산도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체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연결납세제도가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수미 일관되게 규정되어야 하지만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보듯이 법률의 적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일부에 대하여는 개별실체개념(separate entity concept)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²³⁸⁾ 따라서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제적 실체개념의 완벽한 채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법적 실체개념을 채택하여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체를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비판이 가해질 수 있겠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손익대체 등 경제적 실체개념의 일부를 허용한다면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제적 또는 조세효과를 가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즉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더라도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기업집단세제를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으로 인한 세액증감

가.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하에서는 단일실체개념에 입각하여 기업집단이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따라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들이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부담하는 세액의 합계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 요인으로는 결손의 통산, 배당과세의 근거소멸, 지분기초가액의 수정효과, 내부미실 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여지 소멸, 세법상 손금 및 각종 공제한도의 통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

238) 예를 들어 개별기업이 선택한 회계처리방법은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존중되는데 이는 개별실체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음과 같다.²³⁹⁾

1) 결손통산효과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각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 일정기간(5년)에 한하여 공제하게 된다.²⁴⁰⁾ 그러나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은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액감소효과는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있어서 결손금 공제시한인 5년 내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제도가 없더라도 당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 결손금이 공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조세부담이 이연되는 효과, 즉 세액의 일시적 감소에 그치게 된다. 또한 세율의 상승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세율보다 개별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연결납세로 인하여 관련 사업연도에 걸쳐 부담할 세액의 합계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세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있어서 결손금 공제시한인 5년 내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효과가 영구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기초가액의 수정여부에 달려 있다. 즉 자회사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모회사의 자회

239) 김진수·이준규(2002), pp. 118~130의 내용에 그 이후 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수정한 것이다.

240) 이월공제제도와는 별도로 1997년부터 적용되는 소급공제제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을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할 뿐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다(법인세법 제72조).

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세액증감효과가 일시적이며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구적이다.

2) 배당과세배제효과

(1) 배당수입의 익금불산입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으로 부터 배당을 받게 되면 당해 배당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배당을 받는 법인의 입장에서 별개의 납세의무자인 다른 법인으로 부터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 배당이라고 본다면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중복과세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비효율 또는 기업 지배구조의 선택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제적인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배당수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는 기관투자가, 지주회사 및 그 이외의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 동일하지 아니하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기관투자가(금융기관 등)는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 중 9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가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나)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²⁴¹⁾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의제배당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즉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4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8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40%)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자회사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한다.

- ① [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차입금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

241) 자회사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 ①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3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 ②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일 것

자하였거나 계열회사 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①에서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일반 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기관투자가 및 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부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18조의 3). 즉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30%)를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5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30%)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3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배당을 지급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배당을 지급받은 법인의 차입금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감한다.

<표 VI-1>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의 유형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 적용제한
기관투자자	90%	출자비율 10% 초과시 적용배제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비율 100% : 전액 · 출자비율 80%(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40% 초과 100% 미만 : 90% · 출자비율 80%(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40% 이하 : 60% 	다음의 금액은 차감 ①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② 계열회사 또는 다른 법인에 1% 초과 출자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 중 일부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및 지주회사 이외의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비율 100% : 전액 · 출자비율 50%(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초과 : 50% · 출자비율 50%(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이하 : 30%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차감

(2)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배당에 대한 과세제외의 효과

법인 간 배당거래에 대한 과세는 각 법인이 별개의 독립된 실체이며 별개의 납세의무자라는 관점에서 범형식적인 논리의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속법인 간의 배당은 내부거래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즉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배당수수는 내부부서 간의 자금이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인 중복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과세소득에서 제외(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 효과는 개별납세를 하는 경우에 조정되지 아니하는 중복과세부분에 한하게 된다. 즉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세액감소효과가 전혀 없거나 수입배당금액의 10% 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감소하게 되며, 지주회사 또는 기관투자자 이외

의 법인의 경우에는 세액감소효과가 전혀 없거나 수입배당금액의 50% 또는 70%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연결납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감소효과가 영구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았을 때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기초가액)을 수정하는지에 달려 있다. 즉 연결납세로 인하여 추가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수입을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배당과세배제로 인한 세액감소효과는 당해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미치며 장부가액을 수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면 영구적인 효과를 가진다.

3) 지분기초가액의 수정효과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법인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이 통산되어 과세된다. 이때 연결납세신고를 하던 기업집단의 모회사가 누적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대로 유가증권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면 매각가격에는 누적소득의 발생으로 인한 지분가치의 증가분이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처분이익에 대하여 과세됨에 따라 자회사의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되는 것과 함께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실체라는 관점에서는 논리적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으나 단일실체개념을 채택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논리를 따른다면 타당하지 않으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처럼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회사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기초가액)을 증액시켜야 한다. 이렇게 장부가액을 수정하면 지분을 매각하는 때 지분처분이익이 감소하며 연결납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액이 감

소하게 된다. 이러한 세액감소효과는 영구적인 것이다.

한편 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현금 유출)으로 인하여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감소하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즉 모회사가 배당을 지급받을 때 배당액의 전액이 연결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자회사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의 감액을 통하여 당해 지분을 매각하는 때의 처분이익을 증가시켜 연결과세소득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배당받을 때 과세가 유예된 소득이 지분을 매각하는 때 과세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당과세의 배제로 인한 세액감소효과는 자회사주식이 처분되어 세액증가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일시적인 것이다. 다만, 개별납세신고에 있어서 수입배당액 중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결납세제도와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아니하면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만 감액되므로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때의 세액증가효과는 영구적인 것이다.

자회사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반대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은 감액하여야 한다. 이는 자회사의 결손이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었는데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때 당해 지분의 취득가액을 전액 공제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하도록 한다면 이중공제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회사의 결손에 대하여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경우 결손으로 인한 세액증가효과는 영구적이다.

4)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효과

법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장부가액과 다르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즉 자산의 매각거래에 있어서는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매각하는 법인이 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게 되며 장부가액에 미달하게 매각하는 경우 자산처분손실을 계상하게 된다. 이들 처분손

익은 개별법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가감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결집단 구성법인 간의 자산매각거래는 앞서 언급한 배당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실체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자산매각거래에서 개별법인이 손익을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결납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손익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부미실현손익을 연결납세신고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세액증감효과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당해 미실현손익이 실현되는 때까지 조세부담(또는 경감)이 이연되는 것일 뿐이다.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매각거래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은 당해 재고자산 등을 매입한 법인이 외부의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 실현되며 고정자산의 매각거래에 있어서는 당해 고정자산을 매입한 법인이 감가상각을 하거나 외부의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때 실현된다.

5) 부당행위부인배제효과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이러한 부당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고가매입에 대하여는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매입하는 때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하는 때 과세하며 저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하는 때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이 하나의 경

제적 실체이기 때문에 당해 부당행위도 실체의 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어진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이로 인한 세액감소효과는 영구적이다.

6) 세법상 각종 한도의 통산효과

세법에서는 손금 또는 각종 공제의 한도에 대하여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접대비의 손금한도, 각종 준비금의 한도, 세액공제의 한도, 최저한세 등이 그 예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각종 한도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개별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의 해당 항목의 합계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액의 증감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항목별 한도에 비하여 총계기준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항목에서는 한도를 초과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총계기준한도를 적용한다면 한도초과액과 한도미달액이 서로 상계되는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항목별 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고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총계기준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므로 한도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한도율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측면(세액감소효과)이 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업집단 전체에 대하여 한도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한도계산의 기준 또는 한도율이 연결납세로 인하여 달라지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접대비는 매출규모에 따라 한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즉 접대비 한도율은 매출규모가 클수록 낮아진다.²⁴²⁾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연결접대비한도를 계산하도록

한다면 연결집단 구성법인의 매출이 합산되어 매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낮은 한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개별납세의 경우에 비하여 한도초과액을 증가시켜 세액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연결납세제도하에서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재고자산거래가 있다면 당해 내부거래는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연결집대비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세액증가효과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금한도를 정하는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의 경우에도 같다.

7) 세율누진효과

현행 법인세법상 세율구조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즉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3%,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5%가 적용된다.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각 법인별로 과세표준 중 최초 1억원에 대하여 낮은 세율인 13%가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 과세표준 전액 중 1억원에 대하여만 낮은 세율인 13%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표 VI-2>는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는 경우 조세부담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242)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매출액에 대하여는 0.1%, 50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는 0.03%.

<표 VI-2> 연결납세제도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직접효과

세액증감의 요인	세액증감여부	영구적 또는 일시적(과세이연) 효과 여부
결손통산	세액감소, 단 세율상승 시 세액증가가능성 있음	일시적 효과, 단 결손범인에 5년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지분기초가액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구적 효과
배당과세배제	세액감소	일시적 효과(단, 익금불산입 부분은 영구적 효과)
지분기초가액의 수정효과	누적 소득발생(배당제외 후)시 감소, 누적 결손발생시 증가	소득발생 증액 및 결손발생 감액은 영구적 효과, 배당으로 인한 감액은 일시적 효과(단, 익금불산입 부분은 영구적 효과)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미실현이익의 경우 세액 감소, 미실현손실의 경우 세액증가	일시적(과세이연) 효과
부당행위부인 배제	세액감소	영구적 효과
각종 한도의 통산	세액감소 또는 증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 효과
세율누진	세액증가	영구적 효과

8) 세수감소의 추계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는 경우 세수감소를 추계한 연구로는 김진수·이준규(2002)의 연구가 있으며 그 결과는 <표 VI-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김진수·이준규(2002)의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연결납세제도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요인 중 결손통산효과, 배당과세배제효과 및 세율누진효과만을 추계하였다. 동 연구 이후 세율의 변동 등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세수감소규모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이나 중요하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3>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

연결납세범위	결손통산효과	배당과세 배제효과	세율누진효과	합 계
지분율 50% 이상				
2000년	11,927억원 감소	193억원 감소	52억원 증가	12,068억원 감소
2001년	5,215억원 감소	334억원 감소	63억원 증가	5,486억원 감소
지분율 80% 이상				
2000년	9,350억원 감소	142억원 감소	27억원 증가	9,465억원 감소
2001년	3,444억원 감소	291억원 감소	33억원 증가	3,702억원 감소
지분율 95% 이상				
2000년	6,159억원 감소	123억원 감소	19억원 증가	6,263억원 감소
2001년	3,065억원 감소	261억원 감소	24억원 증가	3,302억원 감소
지분율 100%				
2000년	5,076억원 감소	107억원 감소	14억원 증가	5,169억원 감소
2001년	2,618억원 감소	97억원 감소	17억원 증가	2,698억원 감소

자료 : 김진수·이준규(2002).

나.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

영국의 결손이전제도에서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결손이전(컨소시엄의 결손이전 포함) 및 자본자산에 대한 내 부미실현손익의 과세이연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경우 결손이전 이외에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가급적 단순하게 기업집단세제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결손이전만을 허용한다면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중 결손통산효과 이외의 것에서 양제도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비교하면 <표 VI-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VI-4> 연결납세형 및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조세효과비교

구 분	연결납세형	손익대체형
세액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통산효과(일시적 또는 영구적 차이) · 배당과세배제효과(일시적 또는 영구적 차이) · 지분기초가액수정효과; 소득발생시(일시적 또는 영구적 차이) · 내부미실현이익제거효과(일시적 차이) · 부당행위부인배제효과(영구적 차이) · 각종 한도 통산효과(일시적 또는 영구적 차이) 	· 결손통산효과
세액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기초가액수정효과; 결손발생시(일시적 또는 영구적 차이) · 내부미실현손실제거효과(일시적 차이) · 각종 한도 통산효과(일시적 또는 영구적 차이) · 세율누진효과(영구적 차이) 	
순 증감여부	감소 또는 증가	감소

<표 V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의 조세효과는 대부분 결손통산효과(93~99%)이고 배당과세배제효과 및 세율누진효과(1~7%)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분기초가액의 수정효과,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배제 및 각종 한도의 통산효과는 그 효과가 서로 상계되거나 과세이연효과에 불과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양 세제의 차이는 크지 아니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현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를 억제하고 계열회사 간의 부당거래를 규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에 기업집단세제가 도입되더라도 계속 동 제도가 유지된다면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으로 인한 세수증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기업집단세제의 복잡성 및 비용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에서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와는 달리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과세소득 및 세액산정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별도의 과세소득 및 세액산정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조세회피방지규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IRC Chapter 6(연결납세)와 그에 대한 시행규칙(Federal Tax Regulations)인 연결납세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이에 비하여 영국의 기업집단세제는 ICTA와 TCGA에 포함되어 있으며 40여 페이지에 불과하다. 물론 관련 규정의 분량을 단순히 비교하여 제도의 복잡성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라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와 영국의 결손이전제도의 관련 조항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과세소득 또는 연결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한 조항들은 연결납세규칙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1.1502-9 연결국외손실과 개별한도(Consolidated overall foreign losses and separate limitation losses)
- § 1.1502-11 연결과세소득(Consolidate taxable income)
- § 1.1502-12 개별과세소득(Separate taxable income)
- § 1.1502-16 탐광비(Mine exploration expenditures)
- § 1.1502-17 회계처리방법(Methods of accounting)
- § 1.1502-18 재고수정(Inventory adjustment)

- § 1.1502-21 결손(Net operating losses)
- § 1.1502-22 연결자본손익(Consolidated capital gain and loss)
- § 1.1502-23 연결순사업용 자산손익(Consolidated net section 1231 gain or loss)
- § 1.1502-24 연결기부금공제(Consolidated charitable contributions deduction)
- § 1.1502-26 연결수입배당공제(Consolidated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 § 1.1502-27 연결지급배당공제(Consolidated section 247 deduction)
- § 1.1502-78 임시 소급공제수정(Tentative carryback adjustments)
- § 1.1502-44 유전 및 가스전 등에 대한 감모상각(Percentage depletion for independent producers and royalty owners)

한편 영국의 결손이전제도에서 과세소득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ICTA의 제10편 제4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s402 기업집단과 컨소시엄 소속법인 간의 결손이전(Surrender of relief between members of groups and consortia)
- s403 결손이전에 의하여 대체가능한 금액(Amounts which may be surrendered by way of group relief)
- s403A 결손이전의 한도(Limits on group relief)
- s403B s403A에서의 배분방법(Appportionments under s403A)
- s403C 컨소시엄의 결손이전액(Amount of relief in consortium case)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제도에서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개별 법인의 손익항목들을 합산하고 이를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의 제도에서는 그러한 조항들은 필요가 없으며 결손이전을 위한 조항만

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영국의 제도가 절대적으로 간단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소득의 구분에 따라 조세부담을 달리하는 영국 고유의 스케줄 제도와 컨소시엄에 대한 결손이전제도에서 기인하며 순수한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결손이전만을 위한 조항은 일부에 불과하다.

나.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이연에 관한 규정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을 포괄적으로 이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납세규칙 §1.1502-13(내부거래)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만 내부거래손익을 이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TCGA에서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에 관한 조항들(Part VI Chapter I)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s170 s171부터 s181까지의 해석(Interpretation of s171 to s181)

s171 기업집단 내 자산양도: 총칙(Transfers within a group: general provisions)

s171A 기업집단 내 양도의 의제(Notional transfers within a group)

s173 기업집단 내 양도: 주식(Transfers within a group: trading stock)

s175 기업집단 소속법인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교체(Replacement of business assets by members of a group)

s176 기업집단 내 자산의 저가양도(Depreciatory transactions within a group)

s177 배당에 의한 가치가 감소된 기업집단 소속법인 주식의 양도 (Dividend stripping)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관련 조항은 여러 개인 데 비하여 미국의 관련 조항은 한 개(§ 1.1502-13)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의 내부거래

손익을 규율하는 조항인 § 1.1502-13은 분량이 15페이지에 달하여 영국의 관련 조항과 절대적인 분량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아니한다.

다. 조세회피방지규정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처음 도입 이후 80년 이상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왔으나 예상되는 모든 조세회피행위를 열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조치를 유형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처분손실의 부인, 내부거래손익, 기초가액수정, 초과손실계정, E&P, 지분변동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IRC section 1504(a)(5) 연결납세집단 범위의 자의적 조정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

§ 1.1502-21(c)(1)(i) 개별납세제한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제한

§ 1.1502-75(d)(3)(i) 역취득에 대한 규제

§ 1.1502-15 내포손실에 대한 개별납세제한연도규제(SRLY limitation on built-in losses)

§ 1.1502-19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s)

§ 1.1502-20 자회사주식의 처분 또는 연결납세집단으로부터의 이탈
(Disposition or deconsolidation of subsidiary stock)

§ 1.1502-45 위험부담과 관련 없는 결손공제의 제한(Limitation on losses to amount at risk)

§ 1.1502-91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제382조의 적용(Application of section 382 with respect to a consolidated group)

- § 1.1502-92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Ownership change of a loss group or a loss subgroup)
- § 1.1502-93 제382조 연결한도 또는 하위집단한도(Consolidated section 382 limitation or subgroup section 382 limitation)
- § 1.1502-94 새로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 제382조와 관련규칙의 적용(Coordination with section 382 and the regulation thereunder when a corporation becomes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 § 1.1502-95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의 규칙(Rules on ceasing to be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or loss subgroup)
- § 1.1502-96 기타 규칙(Miscellaneous rules)
- § 1.1502-98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제383조의 적용(Coordination with section 383)
- § 1.1504-4 주식인수보증권, 옵션, 전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분증권의 처리(Treatment of warrants, options, convertible obligations, and other similar interests)
- § 1.1551-1 부가세면제 및 유보이익세액공제의 불허(Disallowance of surtax exemption and accumulated earnings credit)
- § 1.1561-1 특수관계법인과 관련한 중복조세혜택의 제한(Limitation on certain multiple tax benefits in the case of certain controlled corporations)

영국의 기업집단세제에서도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비하여 다양하지는 않지만 결손이전과 내부거래손익의 이연과 관련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ICTA에서의 결손이전과 관련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s403D 비거주법인의 결손이전(Relief for or in respect of non-resident

companies)

s403E 영국거주법인의 해외결손이전(Relief for overseas losses of UK resident companies)

s404 이중거주법인의 결손이전제한(Limitation of group relief in relation to certain dual resident companies)

s405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인 동시에 컨소시엄의 소속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의 결손이전(Claims relating to losses etc of members of both group and consortium)

s406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인 동시에 컨소시엄 회사가 있는 경우의 결손이전(Claims relating to losses etc of consortium company or group member)

s407 기업집단의 결손이전과 다른 조세특례규정 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group relief and other relief)

s410 다른 기업집단 또는 컨소시엄에 자회사의 양도(Arrangements for transfer of company to another group or consortium)

s411 중복적용의 배제(Exclusion of double allowance)

s413 제4장의 해석(Interpretation of Chapter IV)

또한 TCG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거래손익의 이연과 관련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은 다음과 같다.

s177A 기업집단 가입 전 결손의 사용제한(Restriction on set-off of pre-entry losses)

s177B 결손과 기업집단 가입 전 이득의 상계제한(Restrictions on setting losses against pre-entry gains)

s179 기업집단에서 탈퇴하는 법인(Company ceasing to be member of group: post-appointed day cases)

s179A s179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기업집단 내 할당(Reallocation within group of gain or loss accruing under section 179)

s179B 사업용 자산에 대한 기업집단 이탈가산세의 적용배제

(Roll-over of degrouping charge on business assets)

s181 특정 합병에 있어서 s179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Exemption from charge under 179 in the case of certain mergers)

영국에서의 자본자산에 대한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제도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제도는 아니다.²⁴³⁾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경우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제도를 포함시킬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만약 포함하지 아니한다면 영국식의 기업집단세제는 상당히 간략하게 입법될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조세회피방지규정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 연결납세제도에서는 필요하나 손익대체제도에서는 필요 없는 규정

1) 연결세액의 산정 및 연결신고에 관한 규정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개별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항목들을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공통의 모회사가 연결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적용될 규정들이 필요하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영국의 결손이전제도에서는 결손대체를 한 후에는 각 법인들이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들이 필요 없다.

IRC Chapter 6 Subchapter A. 연결납세액의 신고납부

§ 1.1502-2 연결세액의 산정(Computation of tax liability)

§ 1.1502-3 연결투자세액공제(Consolidated investment credit)

243) 독일의 경우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제도는 없다.

- § 1.1502-4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Consolidated foreign tax credit)
- § 1.1502-5 추정세액의 납부(Estimated tax)
- § 1.1502-6 연결세액의 납세의무(Liability for tax)
- § 1.1502-43 연결유보소득세(Consolidated accumulated earnings tax)
- § 1.1502-47 생명보험회사와 비생명 보험회사의 연결납세
(Consolidated returns by life-nonlife groups)
- § 1.1502-55 연결납세집단의 최저한세(Computation of alternative
minimum tax of consolidated groups)
- § 1.1502-75 연결납세신고서의 제출(Filing of consolidated returns)
- § 1.1502-76 구성법인의 사업연도(Taxable year of members of group)
- § 1.1502-77 자회사를 위한 공통의 모회사의 대리(Common parent
agent for subsidiaries)
- § 1.1502-79 개별납세 사업연도(Separate return years)
- § 1.1503-1 세액의 계산과 납부(Computation and payment of tax)
- § 1.1561-2 조세혜택금액의 결정(Determination of amount of tax
benefits)
- § 1.1561-3 부가세 감면의 배분(Appportionment of surtax exemption)
- § 1.1563-1 특수관계집단과 그 구성법인의 정의(Definition of controlled
group of corporations and component members)

2) 투자수정 및 연결 E&P에 관한 규정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바와 같이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 주식의 기초가액과 E&P를 수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영국의 결손이전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별실체개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

- § 1.1502-30 특정 삼각구조조정 후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Stock
basis after certain triangular reorganizations)

§ 1.1502-31 연결납세집단의 구조조정 후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Stock basis after a group structure change)

§ 1.1502-32 투자수정(Investment adjustments)

§ 1.1502-33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 1.1552-1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E&P)

4.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또는 변경에 대한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에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연결납세형과 손익대체형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근 외국에서의 도입사례나 제도변경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중국, 미국 및 일본) 중의 하나인 일본이 미국식의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2002년에 도입하였고, 호주는 영국식의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여 적용하다가 2002년에 이를 폐지하고 미국식의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3대 교역국 중 기업집단세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호주가 최근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로 변경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선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일본과 호주가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한 이유와 논리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호주가 미국식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하여 받아들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도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일 본

1) 연결납세제도의 채택

일본은 1999년부터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여 2002회계연도부터 미국과 프랑스의 제도를 기초로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도입에 앞서 재무성 주세국이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거쳐 추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세수감소규모가 8천억엔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강화 및 경제의 구조개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일본이 영국의 결손이전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겠다.²⁴⁴⁾

첫째, 개인에 대한 임퓨테이션 방식 또는 법인에 대한 수입배당 익금불산입규정에 의하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나 결손이전제도를 채택하나 주주단계의 세후배당소득에는 차이가 없다.

둘째, 결손이전에 의한 감소세액분의 상호결제, 즉 결손공제권의 매매가 실무관습으로 정착하고 있는 영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와 같은 관행이 없는 일본에서 행정청과 납세자 쌍방에게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결손이전제도는 조세회피에 이용되기 쉽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될 부담감이 있으므로 일본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셋째,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 자본자산의 원가인도제도는 은폐된 이익의 이전을 초래하며, 시가거래기준에 의한 소득귀속을 전제로 하는 일본세제에 도입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영국의 결손이전제도 대신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한 이유로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일본 입법당국에 결정적인 영

244) 井上久彌 1995, p. 280.

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도 기업 집단 소속법인 간에 결손통산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영국의 결손이전제도와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100% 자회사만을 연결납세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손공제권의 매매는 무의미하다. 또한 세후배당소득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든가 결손공제권의 매매관행 또는 자본자산의 원가인도 제도의 문제점은 연결납세제도의 복잡성을 감수하여야 할 명분으로 는 정당화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일본이 영국의 결손이전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 이유보다는 오히려 각국의 기업집단세제 중 가장 오랜 역사와 경험을 집적하였고 개별세제에 대하여 일본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기업집단세제는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논리와 미국세제와의 조화를 채택하는 대신 제도의 상대적 단순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연결납세제도의 입법과 도입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의 별도 장²⁴⁵⁾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부가세와 각종 조세특례의 연결기준 재산정에 관한 규정은 조세특별조치법에 포함되어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은 63개의 조항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고 그 분량은 70여 페이지에 달하였으며 조세특별조치법은 부칙 36개 조항을 포함하여 77개의 조항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고 그 분량은 100여 페이지에 달하였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단계에서 일본 정부는 예기치 않은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전형적인 미국식의 제도에 상당한

245) 법인세법 제2편(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제1장의 2(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정을 가하여 입법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세수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제도도입 후 2년간 연결부가세 2%를 부과(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의 8)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규정을 폐지하였다.

둘째,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고자산에 대하여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미실현손익의 제거가 납세자측에 부담을 줄 염려가 있고, 재고자산은 단기간 내에 판매될 것이므로 미실현손익의 제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실현손익의 제거로 인하여 세수감소액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셋째,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를 지분비율이 100%인 자회사로 한정하였다. 이는 100% 미만을 소유한 자회사를 연결납세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소수주주가 있게 되며, 소수주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연결납세제도가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겠다.

넷째, 감가상각비, 교환에 의한 압축기장, 충당금과 준비금, 설비투자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지 아니하고 개별법인의 계산을 그대로 허용한다. 이는 실무 적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에서와 유사하게 개별실체개념을 일부 채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개시하는 경우 자회사는 연결납세 개시 또는 연결가입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시에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시가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계상하도록 하였다(법인세법 제61조의 11 및 12).

여섯째, 연결납세를 개시하기 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시 공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결신고개시 전 5년 이내에 행해진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된 모회사가 그 이후 계

속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00% 자회사의 적용개시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기 사용될 수 있다.²⁴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는 앞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세수감소의 우려를 감안하여 전형적인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의 논리를 일부 포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일본기업의 반응

(1) 니시모토 야스히로 교수의 연구(2004)

연결납세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일본기업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로는 니시모토 야스히로(西本靖宏)와 오오쿠라 유우지로(大倉雄次郎)의 연구가 있다. 니시모토 야스히로 교수(2004)는 2002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직후 일본의 1,474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방식의 조사를 하였는데 213개 회사가 회답(회답률 14.5%)하였다. 우선 연결납세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회답은 연결부가세 폐지와 관계 없이 선택할 예정인 기업 16사(7.5%), 연결부가세가 폐지되는 경우 선택할 예정인 기업 8사(3.8%), 시기를 보아 결정할 예정인 기업 62사(29.1%), 미결정인 기업 33사(15.5%), 선택하지 않을 예정인 기업 93사(43.7%)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자회사의 수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회사의 수가 10사 미만인 경우 연결납세를 선택할 예정인 기업은 120사 중 32사(27%)에 불과한 데 비하여 자회사의 수가 30사 이상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를 선택할 예정인 기업이 35사 중 28사(80%)였다. 이는 연결납세제도가 자회사의 수가 많은 대규모 기업에 유리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46) 법인세법 제81조의 9 제2항.

연결부가세를 2년간 2%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응은 즉시 철폐하여야 한다는 기업 161사(75.6%), 가능한 한 철폐하여야 한다는 기업 43사(20.2%), 부득이하다는 기업 6사(2.8%), 당연하다는 기업 1사(0.5%)였다. 이는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다.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의 지배관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94사(44.1%), 80% 미만이라는 응답이 14사(6.6%), 80% 이상이라는 응답이 26사(12.2%), 90% 이상이라는 응답이 21사(9.9%), 100%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54사(25.4%)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는 점은 연결납세에 큰 관심이 없는 기업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100% 자회사의 수가 30사 이상인 회사에서는 100% 자회사만을 연결납세의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54%여서 가급적 연결납세의 범위를 넓게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연결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전부를 연결납세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강제규정에 대하여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30사(14.1%),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35사(16.4%), 부득이하다는 응답이 110사(51.6%),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4사(11.3%), 매우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1사(5.2%)였다. 연결범위의 강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31%)이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으나 100% 자회사가 30사 이상인 회사들은 부정적인 회답이 약 58%에 달하였다.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지 않고 미국식의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한 것에 대하여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사(2.8%),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18사(8.5%), 어느 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이 121사(56.8%),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7사(26.8%),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사(2.8%)였다. 연결납세형이나 손익대체형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연결납세형이나 손익대체형 모두 세액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응답이라고 생각된다.

연결납세개시 전에 발생한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연결납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142사(66.7%),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41사(19.2%), 부득이하다는 응답이 26사(12.2%),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사(0.5%)였다.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연결개시 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손을 가진 자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납세를 선택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예견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100% 자회사가 30사 이상인 회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100%였다.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개시하는 경우 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시가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0사(28.2%),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35사(16.4%),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이 100사(46.9%),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4사(6.6%), 매우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사(0.9%)였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회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62%였고 100% 자회사가 30사 이상인 회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77%에 달하였다.

예기하지 못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대하여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25사(11.7%),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23사(10.8%),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이 108사(50.7%),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0사(23.5%), 매우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사(0.5%)였다.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취지에 반대할 기업은 없었으나 부정적인 응답을 한 기업들은

포괄적인 규정의 성격상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명확하지 아니할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연결납세제도가 복잡한지에 대하여는 간편하다는 응답이 3사(1.4%),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이 36사(16.9%), 복잡하다는 응답이 97사(45.5%), 매우 복잡하다는 응답이 74사(34.7%)였다. 특히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기업들은 복잡하거나 매우 복잡하다는 의견이 100%였다.

니시모토 야스히로 교수의 연구(2004)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방식에 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의 절세효과를 축소시키는 규정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세수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연결납세제도의 일부 논리를 포기함에 따라 기업들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2) 오오쿠라 유우지로 교수의 연구(2004)

오오쿠라 유우지로(大倉雄次郎) 교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2002년과 그 다음 연도인 2003년의 2회에 걸쳐 동경증권거래소 제1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답을 한 기업의 수는 2002년에 213사, 2003년에 198사였다. 동 연구에서의 설문 내용 중 니시모토 야스히로 교수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집계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결납세제도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120사(60.6%),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연결납세기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2사(21.2%), 연결납세제도 적용시 시가평가하도록 한 것이라는 응답이 1사(0.5%), 연결납세제도 적용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없다는 응답이 9사(4.5%), 연결납세제도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사(1.5%)였다.

연결납세집단의 다른 소속회사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에 대하여 2003년의 응답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5.5%,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14.6%,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의견이 28.3%,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6%,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5%였다. 2002년에는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19.3%로 약간 높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2003년과 비슷한 응답이 있었다.

교제비를 연결납세기 모회사에서 일괄하여 손금불산입과 세무조정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2003년의 응답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35.4%,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21.2%, 부득이하다는 의견이 34.8%,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0%,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0.5%였으며 2002년의 응답도 큰 차이가 없었다.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재고자산은 제거제외)하는 데 대하여 자산의 유형별 의견을 설문한 결과는 <표 V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표 VI-5>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에 관한 일본기업의 의견

(단위: %)

구 분	고정자산 포함		금전채권 포함		재고자산 제외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8.1	9.4	4.5	5.2	10.6	8.9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8.1	8.0	6.1	6.1	11.1	15.5
어느 쪽도 아니다	45.5	38.5	41.9	43.7	43.4	37.1
바람직하다	34.7	34.7	35.9	37.1	22.2	27.7
매우 바람직하다	8.0	8.0	6.6	6.6	8.1	8.9

4)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

일본의 기업집단세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기초로 하되 상당히 수정이 가해진 제도로 도입되었다. 우선 세수감소를 완화하고 조

세회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연결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연결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100% 자회사로 한정함으로써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또한 자회사의 연결개시 전 발생한 결손금을 연결납세기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가 연결납세기 시점에서 보유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손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연결납세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연결납세제도의 복잡함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도록 하였고, 증당금 등에 대하여 개별 실체개념을 적용하여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결납세의 대상을 100% 자회사로 함으로써 소수주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제도의 특성상 복잡성의 대부분은 그대로 남게 되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기업들이 연결납세제도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제도의 복잡성을 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일본의 기업집단세제는 연결납세형을 선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최대의 약점인 복잡성을 감수하는 대신 미국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 실체개념을 채택하여 수미일관된 논리적 제도로 입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감소의 우려 및 실무적인 고려로 인하여 단일실체개념의 논리를 상당 부분 포기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손익대체형과 연결납세형 중 어느 편이 좋은지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기업집단세제의 도입과 관련한 세액효과는 유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경우 일본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나. 호 주

1) 기업집단세제의 개요

호주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 이를 미국식의 연결납세제도로 대체하였다. 연결납세제도로 대체되기 전 호주의 기업집단세제인 통산규정(grouping provisions)은 영국의 기업집단세제를 기초로 하되, 이를 수정 및 확장한 것으로서 2003년 6월 30일에 폐지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①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 결손의 이전
- ②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 자산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이연
- ③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전
- ④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 배당으로서 과세제외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세액환급
- ⑤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egime)를 기업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

2002년 이후부터 적용된 현행 호주의 기업집단세제(consolidation rules)는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요소를 상당부분 도입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연결납세는 기업의 선택에 의하되 일단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연결대상 자회사는 모회사(head entity)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로 한정된다.
- ③ 종전의 제도와는 달리 기업집단의 세무신고는 단일의 신고서에 의하며 기업집단 소속법인은 연결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④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거래는 무시된다.
- ⑤ 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액공제들은 통산된다.
- ⑥ 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액공제들은 자회사가 기업집단에서 이탈하더라도 모회사에 귀속된다.

- ⑦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 배당은 무시된다.
- ⑧ 기업집단에 소속되기 전에 보유하던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자산의 특성은 소속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2) 제도변경의 배경 및 입법

호주에서 연결납세제도의 제안자인 랄프(John Ralph)는 그의 보고서에서 통산규정에 의한 당시의 조세제도하에서는 기업집단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너무 크고 조세회피방지규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⁴⁷⁾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안을 의회에 제출한 쿤안(Helen Coonan) 상원 의원은 “연결납세제도가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 사업상의 유연성을 촉진하고 호주기업들이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데 더 자유롭게 하며, 낡고 유연하지 못한 현행 과세규정의 장애를 제거하여 더 경쟁력 있게 할 것이다”고 언급하였다.²⁴⁸⁾

호주 정부도 기업집단세제를 손익대체형에서 연결납세형으로 변경한 이유로서 다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을 감소시키고 조세제도의 완전성을 향상시키며 조세회피의 기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²⁴⁹⁾

첫째, 종전의 규정에서는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원가기준조정, 손실이연 및 채무면제 등 복잡한 세법규정들이 개별기업에 적용되었으나 연결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종전의 제도하에서는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에 조세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자기주식을 다른

247) Ralph(1999), 15.1.

248) <http://www.ato.gov.au/> (2005).

249) Australian Taxation Office(2004), p. 5.

소속법인으로부터 사들일 때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청산되는 경우 의제배당이 발생하며,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 자산의 매매에 있어서 손익이 이연되기 위하여는 복잡한 이연요건을 충족하여야 했다.

셋째, 종전의 규정에서는 기업집단 소속법인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회계기간을 가지고 세액을 신고납부하며, 미사용 조세혜택 등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였으나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기업집단이 하나의 회계기간을 가지고 하나의 신고납부를 행하며 미사용 조세혜택을 통산하여 관리하므로 납세순응비용이 감소된다.

2002년에 도입된 호주의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의 분량이 600페이지 이상이고 법률에 대한 예규(Public Rulings and Tax Determinations)가 80개를 넘었으며, 1,200페이지에 달하는 연결납세 해설집(Consolidation Reference Manual)이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3) 호주의 기업집단세제 변경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

호주가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폐지하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는데 주저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호주에서의 제도 변경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 기업집단세제를 개편한 이유는 종전의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인 통산규정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납세협력비용과 과세행정비용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는 연결납세제도에 비하여 단순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호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통산규정에서는 영국의 결손이전제도에서는 없는 미사용 세액공제의 통산, 과소자본세제의 통산 등 연결납세

제도에서의 성격을 이미 갖고 있었고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따라서 호주의 종전 기업집단세제는 복잡하면서도 경제적 실체관의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으로는 결함을 가지는 제도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호주의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세제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연결납세제도는 법률만 600여 페이지를 넘는 분량이어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300여 페이지, 일본의 연결납세제도가 170여 페이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의 방대함과 복잡성은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의 고유한 특성일 것이다. 이는 영국의 기업집단세제가 40여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극적으로 대비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기로 한다면 방대한 입법의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호주가 손익대체형을 연결납세형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기존의 기업집단세제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간단하게 입안할 수 있다면 그 도입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5.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방안

가. 기업집단세제에 포함될 내용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는 기본적으로 개별납세제도이기 때문에 손익대체규정 이외에 기업집단에 대한 조세지원으로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기업집단세제에서처럼 내부거래손익의 이연규정이나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1) 컨소시엄 결손이전

우선 영국의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영국 고유의 제도이다. 이를 조세지원의 확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도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 기업집단세제를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도이며 도입초기에 세수를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영국의 결손이전제도가 복잡하게 된 것은 주로 컨소시엄 결손이전규정에서 기인한다. 물론 기업에는 더 큰 조세지원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으나 기업집단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복잡한 조치들이 필요해지는 등 입법당국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2) 결손이전 이외의 조세지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는 법적 실체개념하에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완화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하여 결손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독일과 같이 결손이전만을 기업집단세제로 하는 국가도 있지만 결손이전제도 이외에 다른 조세지원책을 추가하여 입법하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경우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내부거래손익의 인식을 이연하도록 하고 있고, 호주의 종전 제도에서는 내부거래손익의 이연뿐 아니라 미사용 세액공제의 이전, 과소자본세제의 기업집단 기준 적용 등을 기업집단세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때 결손이전 이외의 조세지원으로서 내부거래손익의 이연규정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집단세제의 도입초기에는 순수한 결손이전제도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등이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가급적 세제를 단순하게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은 일시적인 조세효과에 불과하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서로 상계되므로 결손이전에 비하여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셋째,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자본이득 또는 손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국에서처럼 자본손익을 결손이전대상에서는 제외한다든가 자본자산에 대한 내부거래손익을 이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

넷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내부거래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남용할 여지가 축소될 것이다.

3)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미국, 일본, 호주 등)들은 최초 도입단계에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를 모회사와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100%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수주주로 인한 복잡한 조세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최초에는 100% 자회사만을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10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손이전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어야 할 것이다.

4) 결손이전의 대가수수 및 연대납세의무

100% 자회사만을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결손이전의 대가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연대납세의무의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이후 자회사의 범위를 100% 미만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세법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100% 자회사만을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수주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손이전대가의 적정여부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상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5) 결손이전가산세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초기에 세수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연결가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규정까지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부가세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집단세제의 선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기업집단세제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수감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결손이전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조세회피방지

연결납세제도에서는 기업집단에 소속되기 이전의 조세혜택(예: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 등)을 연결납세기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기 위한 여러 가지 조세회피방지규정(예: 미국의 SRLY)을 두고 있으나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서는 기업집단에 소속되기 이전의 조세혜택은 당해 법인이 개별납세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기업집단의 다른 소속법인에 대체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복잡한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방지규정은 필요하며 입법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옵션이나 전환사채 등을 이용하여 기업집단 범위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둘째,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인 내포손익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기업집단에 가입시킨 후 당해 내포손익을 실현시켜 결손이전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인위적인 손익을 발생시켜 결손이전금액을 증가시키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손익은 인식하되 이전가능 결손금액과 공제가능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결손이전제도의 시안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고 그 내용으로 결손이전만을 포함할 경우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결손이전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세법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이전액

법인세법 제2장 제1절에 결손이전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9관 [기업집단의 결손이전]을 다음과 같은 조항과 함께 신설한다.

법인세법 제54조의 2[결손이전] ①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기업집단의 다른 소속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양수법인이 양수할 수 있는 결손양도법인의 결손금은 결손양수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및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본조의 이하에서도 같다)을 한도로 한다. 결손양수법인과 결손양도법인의 사업연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에 상당하는 결손금을 일치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에 상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양도 또는 양수한다.

③ 사업연도중에 기업집단 소속법인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중 기업집단 소속법인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결손금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결손금을 양도 또는 양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에 상당하는 결손금 및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각 기간의 익금의 합계에서 손금의 합계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기간별로 구분할 수 없는 익금과 손금의 안분 및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결손금 이전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4조의 3[기업집단의 범위] ① 제54조의 2, 제54조의 4 및 제54조의 5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소유관계로 연결된 내국법인의 집단을 말한다.

- ㄱ.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
- ㄴ. 한 법인이 다른 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
- ㄷ.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합동으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

②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스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스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옵션, 전환사채, 주식인수보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전환증권이 발행되었고 당해 전환증권의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증권은 행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환증권”의 범위와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한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4조의 4[내포손익으로 인한 결손이전의 제한] ①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양수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 법인이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가입될 당시의 당해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양수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양도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이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

분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가입될 당시의 당해 자산의 시가가 장부 가액에 미달하는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 연도에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양도의 대상이 되는 결손금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4조의 5[내부거래손익으로 인한 결손이전의 제한] ①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양도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의 다른 소속법인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양도의 대상이 되는 결손금에서 제외한다.

②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양수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의 다른 소속법인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양수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표 VI-6>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 도입안

현행	개정안	취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중략)--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중략) 결손금 (중략)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중략)--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중략) 결손금 (중략)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4. 법인세법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이전액	과세표준 산정시 결손양수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표 VI-6>의 계속

현행	개정안	취지
(신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9관 기업집단의 결손이전 제54조의 2 [결손이전] ①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기업집단의 다른 소속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결손이전 및 결손양도법인의 결손소멸에 대하여 규정
(신설)	제54조의 2 ②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양수법인이 양수할 수 있는 결손양도법인의 결손금은 결손양수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및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본조의 이하에서도 같다)을 한도로 한다. 결손양수법인과 결손양도법인의 사업연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에 상당하는 결손금을 일치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에 상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양도 또는 양수한다.	결손양수의 한도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하고 양수도법인 간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손익의 안분규정을 마련함
(신설)	제54조의 2 ③ 사업연도중에 기업집단 소속법인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중 기업집단 소속법인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결손금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결손금을 양도 또는 양수한다.	사업연도중 기업집단에 가입하거나 기업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기간손익의 안분규정을 마련함
(신설)	제54조의 2 ④ 제항 및 제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에 상당하는 결손금 및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각 기간의 익금의 합계에서 손금의 합계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기간별로 구분할 수 없는 익금과 손금의 안분 및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에 의한다.	구체적 안분방법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표 VI-6>의 계속

현행	개정안	취지
(신설)	제54조의2 ⑤ 제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결손금 이전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손이전시 신청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신설)	제54조의3 [기업집단의 범위] ① 제54조의2, 제54조의4 및 제54조의5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소유관계로 연결된 내국법인의 집단을 말한다. 1.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 2. 한 법인이 다른 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합동으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를 규정함
(신설)	제54조의3 ② 제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으로 인하여 100% 미만 소유하더라도 결손이전이 가능하도록 함
(신설)	제54조의3 ③ 제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옵션, 전환사채, 주식인수보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전환증권이 발행되었고 당해 전환증권의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증권은 행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환증권”의 범위와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한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집단에 소속여부를 조정하여 결손이전하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표 VI-6>의 계속

현 행	개정안	취 지
(신설)	제54조의 4 [내포손익으로 인한 결손이전의 제한] ①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양수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이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되기 전에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가입될 당시의 당해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양수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내포이익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신설)	제54조의 4 ②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양도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이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되기 전에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가입될 당시의 당해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양도의 대상이 되는 결손금에서 제외한다.	내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신설)	제54조의 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기의 산정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신설)	제54조의 5 [내부거래손익으로 인한 결손이전의 제한] ①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양도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의 다른 소속법인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양도의 대상이 되는 결손금에서 제외한다.	내부거래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신설)	제54조의 5 ②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양수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의 다른 소속법인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양수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내부거래이익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VII. 요약 및 결론

기업집단세제는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여야 할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은 거의 없으며 그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있어서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고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도 미국식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집단세제가 아직 입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중요한 하나는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가 너무 복잡하여 입법당국의 부담이 크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대안으로 영국형의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인 결손이전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실체관의 입장에서 기업집단을 단일실체로 보고 각종 조세혜택의 통산,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투자수정 등 수미일관된 논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제도인 데 비하여 영국의 결손이전제도는 법적 실체개념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법인들이 개별적으로 납세하되 조세지원책의 일환으로 결손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결납세제도가 더 우수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도의 복잡성을 비교해 보면,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의 경우 제도를 규정한 법령의 분량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고 복잡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포함하고 있

는 데 비하여 영국의 결손이전제도는 30여 페이지에 불과한 분량이고 그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량은 영국 고유의 규정인 컨소시엄 결손이전 및 소득구분을 위한 스케줄 제도로 인한 조항들이어서 이를 제외한다면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가 월등하게 간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집단세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손통산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제외하고는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투자수정, 각종 한도의 통산 등으로 인하여는 세수감소와 세수증가효과가 서로 상계되며, 상당부분은 조세선급 또는 유예효과만을 가지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결손통산효과에 비하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경우 결손이전만을 규정하더라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수감소효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2002년 미국식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호주는 종전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갖고 있었으나 2002년 이를 폐지하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는 데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도입 초기의 세수감소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연결납세의 논리를 상당부분 포기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느끼는 제도도입상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복잡성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호주의 경우 종전에 적용하던 통산규정이 연결납세제도 요소의 상당부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손익대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방지규정 등이 너무 복잡했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결납세제도로 개편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과 호주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가 우리나라에 절대적으

로 적합하므로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지 말고 결손이전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결국 기업집단세제의 도입형태도 정책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다만,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가 연결납세제도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입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경제적 실질이 세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함에 따라 논리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희생하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는 기본적으로 개별납세제도이기 때문에 손익대체규정 이외에 기업집단에 대한 조세지원으로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국의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영국 고유의 제도이다. 이를 조세지원의 확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도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 기업집단세제를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1) 컨소시엄 결손이전제도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도이며 도입 초기에 세수를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영국의 결손이전제도가 복잡하게 된 것은 주로 컨소시엄 결손이전규정에서 기인한다. 물론 기업에는 더 큰 조세지원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으나 기업집단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복잡한 조치들이 필요해지는 등 입법당국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둘째, 결손이전 이외의 조세지원은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초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손이전 이외의 조세지원으로서 내부

거래손익의 이연규정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초기에는 순수한 결손이전제도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등이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가급적 세제를 단순하게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은 일시적인 조세효과에 불과하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서로 상계되므로 결손이전에 비하여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3)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자본이득 또는 손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국에서처럼 자본손익을 결손이전대상에서는 제외한다든가 자본자산에 대한 내부거래손익을 이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내부거래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남용할 여지가 축소될 것이다.

셋째,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는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초기에는 100% 자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미국, 일본, 호주 등)들은 최초 도입단계에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손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를 모회사와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100%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수주주로 인한 복잡한 조세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최초에는 100% 자회사만을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기업집단 소속법인이 10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손이전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100% 자회사만을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결손이전의 대가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연대납세 의무의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이

후 자회사의 범위를 100% 미만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세법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100% 자회사만을 기업집단 소속법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수주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손이전대가의 적정여부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상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손이전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초기에 세수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연결가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규정까지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부가세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집단세제의 선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기업집단세제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수감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결손이전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 1) 옵션이나 전환사채 등을 이용하여 기업집단 범위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 2)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인 내포손익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기업집단에 가입시킨 후 당해 내포손익을 실현시켜 결손이전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3) 기업집단 소속법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인위적인 손익을 발생시켜 결손이전금액을 증가시키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손익은 인식되어 이전가능 결손금액과 공제가능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광윤,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신고제도의 도입구조 비교연구』, 『세무학연구』, 제19권 제2호, 2001, pp. 35~60.
- 김진수, 『일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내용과 시사점』, 『재정포럼』, 4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
- _____,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향』, 『재정포럼』, 11월호, 한국조세연구원, 1999.
- _____, 『지주회사제도와 조세정책방향』, 정책보고서 99-03, 한국조세연구원, 1999.
- 김진수 · 이준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 김종철 · 오윤택,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화회계법인, 2001.
- _____,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영화회계법인, 2003.
- 김찬섭,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구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9.
- 배준호,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신찬수, 『우리나라의 그룹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5.
- 안경봉, 『기업집단의 과세문제 - 연결납세제도』,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법연구회, 2002.
- 이우택,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7호, 2001.
- _____,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26집, 한국조세연구소, 2000.

- 이준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재정경제부 세제실, 『미국의 법인세법 해설 : 법인 및 주주에 관한 연방소득세법』, 1998.
- 최기호, 『연결납세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실증 연구』, 『2001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회계학회, 2001.
-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2001.
- 한국조세연구소, 『독일의 법인세법』, 1999.
- 剛崎和雄・望月光南, 『日米對比 連結納税のポイント』, ぎょうせい, 2000.
- 大倉雄次郎, 平成卷15年頭論文 『連結納税制度の導入企業動向調査と問題点の検討』, 税経通信, 59(6), 2004.5.
- 白須信弘, 『アメリカ法人税法 詳解』, 中央經濟社, 2002.
- 西本靖宏, 『租税法研究会(113) 連結納税制度に對する經濟界の評價と反應-連結納税制度についてのアソケート調査より』, ジュリスト, 2004.3.
- 税理士法人トーマツ(編), 『詳解 連結納税 Q&A』, 清文社, 2002.
- 税制調査會, 『連結納税制度の基本的考え方』, 2001.
- 税制調査會, 『平成14年度の税制改正に關する答申』, 2001.
- 須田徹, 『アメリカの 税法』, 中央經濟社, 1991.
- 財務省, 『法人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http://www.mof.go.jp>, 2002.
- 租税研究協會, 『日本型連結納税制度について』, 2002.
- 井上久彌 外 2人, 『法人税の計算と理論』, 税務研究會出版局, 2002.
- 井上久彌, 『企業集團税制の研究』, 中央經濟社, 1995.
- 住田孝之, 『連結納税制度の導入に關する検討』, 商事法務, No. 1428, 1996.

- 増井良啓, 『持株会社と租税法』, 商事法務, No. 1428, 1996.
- _____, 『連結納税制度の国際的側面』, ジュリスト, No. 1104, 1997.
- 青山監査法人, 『総解説 連結納税制度 : 分社化・持ち株会社の税務と会計』, 日本経済新聞社, 1998.
- PwCコンサルティング(株) FMSグループ, 『連結納税システム』, 東洋経済新報社, 2002.
- Ault, Hugh J. and Brian J. Arnold, *Comparative Income Taxation*, Aspen Publishers, 2005.
- Australian Taxation Office, *Consolidation in Brief*, 2004.
- Bittker, I. Boris and James S. Eustice,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Warren Gorham & Lamont, 2002.
- Blumberg, Phillip I.,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General)*, Little Brown, 1989.
- Blumberg, Phillip I. and Kurt A. Strasser,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Specific)*, Little Brown, 1992.
- Bowen, N. and Jon Golding(ed.), *Tolley's Tax Legislation 1994-95*, Part 1 & Part 2, 1994.
- Crestol, Jack, Kevin M. Hennessey and Richard F. Yates, *The Consolidated Tax Return*, Warren, Gorham & Lamont, 2002.
- Dolan, Kevin D. and Michael F. Walsh, "Use of Holding Companies in International Tax Planning", *Taxes*, Vol. 73, Dec. 1995.
- Kesti, J., and P. S. Andersen(ed.), *European Tax Handbook 1998*, IBFD, 1998.
- Lerner, Herbert J. and Richard S. Antes,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Filing Consolidated Returns*, Matthew & Company, Inc., 2000.

- Ralph, John, *A Strong Foundation*, 1998.
- RIA, *Internal Revenue Code & Regulations*, 2002.
- Saunders, G., J. Scott and J. M. Watterston, *Corporation Tax 1997-98*, Tolley Publishing Co., 1997.
- Schmitthoff, Clive M. and Wooldridge Frank, *Groups of Companies*, Sweet & Maxwell, 1991.
- Sheffield, Jeffrey T., "Holding Company Formations", *Taxes*, Vol. 64, Dec. 1986.
- Warner, James C., *Consolidated Returns Guide*, CCH, 2003.
- Whiting, Sue, *Corporation Tax*, CCH, 2004.

<국문요약>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능성

이준규·김진수

기업집단세제는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여야 할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은 거의 없으며 그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있어서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고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도 미국식의 연결납세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집단세제가 아직 입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중요한 하나는 연결납세형 기업집단세제가 너무 복잡하여 입법당국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대안으로 영국형의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인 결손이전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실체관의 입장에서 기업집단을 단일실체로 보고 각종 조세혜택의 통산,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투자수정 등 수미일관된 논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제도이다. 반면 영국의 결손이전제도는 법적 실체개념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법인들이 개별적으로 납세하되 조세지원책의 일환으로 결손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결납세제도가 더 우수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복잡성을 비교해 보면,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의 경우 제도를 규정한 법령의 분량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고 복잡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결손이전제도는 30여 페이지에 불과한 분량이고 그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량은 영국 고유의 규정인 컨소시엄 결손이전 및 소득구분을 위한 스케줄 제도로 인한 조항들이어서 이를 제외한다면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가 월등하게 간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집단세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손통산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제외하고는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투자수정, 각종 한도의 통산 등으로 인하여는 세수감소와 세수증가효과가 서로 상계되며, 상당부분은 조세선급 또는 유예효과만을 가지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결손통산효과에 비하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경우 결손이전만을 규정하더라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수감소효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가 연결납세제도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입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경제적 실질이 세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함에 따라 논리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희생하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a Profit-and-loss Transfer Model of Group Taxation in Korea

June-Q Lee and Jin Soo Kim

Group taxation regime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 because most of OECD countries have been introduced it.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is few assertions that raise an objection to the introduction of group taxation regime. Most studies have rested their proposals on premises that the consolidated return model of group taxation should be introduced, because it emphasizes the unity of business conglomerate and it is introduced in the major trade partners such as the U.S. and Japan.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asons that group taxation regime is not enacted, the most important reason might be the complexity of a consolidated return model of group taxation.

Thus, this study reviewed the feasibility of a profit-and-loss transfer model of group taxation as an alternative proposal of the consolidated return model of group taxation. The consolidated return model of group taxation emphasizes the unity of business conglomerate, and has theoretical advantage because it can handle such concepts as the aggregation of tax benefit, deferral of gain or loss of intercompany transactions, and investment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the profit-and-loss transfer model of group taxation permits the corporation of conglomerate to offset of loss against profit as the tax incentive

system. In terms of the reflection of the economic substance, the consolidated return model of group taxation has more attraction.

In terms of simplicity, however, the profit-and-loss transfer model of group taxation has more attraction. The provisions of statutes in the U.S., Japan and Australia that introduced the consolidated return model of group taxation are about hundreds of pages and they comprise the complicated provisions of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s of statutes in U.K. that introduced the profit-and-loss transfer model of group taxation are about thirty pages. A great deal of the provisions are about the consortium group taxation and the schedule system for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In the ca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return model of group taxation, the expansion of tax revenue and the reduction of tax revenue are counterbalanced through deferral of gain or loss of intercompany transactions, investment adjustment, and the aggregation of several bounds except the reduction of tax revenue through the offset of loss against profit. Thus, if the profit-and-loss transfer model of group taxation is introduced and the offset of loss against profit is prescribed, the reduction of tax revenue seems to be not so large as the case of the consolidated return model of group taxation.

In this study, if we admit the fact that the profit-and-loss transfer model of group taxation is not so different from the consolidated return model of group taxation in terms of the tax revenue and is legislated easily, the profit-and-loss transfer model of group taxation might be adopted.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what kind of provisions is necessary when the profit-and-loss transfer model of group taxation is introduced.

<著 者 略 歷>

이 준 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Chicago 대학교 경영학석사(MBA)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
現,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現,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 진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경제학 석·박사
現,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政策報告書 05-02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능성

2005년 12월 22일 인쇄
2005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이준규·김진수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5

ISBN 89-8191-303-X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